

현안분석 2008-

재정법제 연구 08-01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I)

- 교 부 세 -

A Legal Study on the Local Financial Assistance System(I)

- Local Subsidy -

연구자 : 신영수(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Shin, Young-Su

강주영(부연구위원)

Kang, Joo-Young

2008. 6. 30.

국문 요약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서 재원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속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재원균형화와 재원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지방교부세였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으로서 그 경비의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데 특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을 조정하는 기능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조정하는 기능을 더불어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필수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전반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대단히 커서, 지방교부세의 운영은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한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수십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그 효용과 함께 폐단과 한계도 줄곧 제기되어 왔다. 자의적인 집행으로 인해 투명성과 통제수단을 적절히 확보하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그것이며, 자치단체간에 교부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상의 제약으로 인해 추가적 재원 공여의 필요성이 높은 낙후지역에 정책적 배려를 하기 어렵다는 상반된 문제점도 노출시키고 있다. 거기에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한 지방교부세의 부당운영 사례들이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핵으로서 지방교부세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법적, 현실적 문제점들의 소재를 분석하고, 지방교부세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운영을 위해 수립되어야 하는 법적 원칙을 규명하며, 지방교부세의 교부주체으로서 국가 및 행정안전부, 교부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와 절차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제도의 내실화와 효율화 및 투명화를 제고

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한 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제가 수립되어 온 궤적을 추적하는 한편 우리 법의 모델이 된 일본법제를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과 차이점을 규명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아울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결론에 대신하여 도출하였다.

키워드 : 지방재정조정,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Abstract

The rate of fiscal independency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always stayed at low level. For that reason, they have no choice but to obtain financial suppor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rough various measures. Among those measures, local subsidy have played especially important roles for the local finance equalization and guarantee of the 'national minimum'. And that, as for local governments, it's an independent revenue source having no restrictions on using.

At the same time, however, lots of problems regarding management of the local subsidy such as overestimate of fiscal demands and unfair use of obtained funds have frequently occurred. In consequence, varied opinions and suggestions to solve the problems have been presented mainly in the field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or the economy of public finance. On the other hand, legal or legislative approach to the issue has not been sufficiently performed.

In this circumstances, this paper tries to some institutional or legislative suggestions to improve the efficiency, transparency and equitability of the local subsidy system. For this purpose, the paper firstly makes an analysis of financial status of each the local governments and its proportion to the whole revenue sources. And then it reviews legislative history and points out the imperfections of the current the Local Subsidy Act upon the basis of examination on the recent legislative reformation in Japan. Finally, it proposes legislative enhancement scheme to supplement and amend the Act, as the conclusion.

Key words :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Local Subsidies, General Subsidies, Special Subsidies, Decentralization Subsidies, Real Estate Subsidies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1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 2 장 지방재정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제도	15
I.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재정자립도	15
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규모와 대외 의존도	15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현황	16
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과 유형	18
III. 지방교부세 제도의 취지와 기능	20
1. 제도의 취지	20
2. 지방교부세의 기능	21
3. 재원의 성격	23
IV. 지방교부세 운용 현황	24
제 3 장 지방교부세 관련법제의 연혁과 현행제도의 문제점	29
I. 지방교부세법 제정 이전의 관련 법제	29

1. 임시지방분여세법 시대(1951년)	29
2. 지방분여세법 시대(1952년 ~ 1958년)	30
3.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시대(1959년 ~ 1961년)	33
Ⅱ. 지방교부세법 시대(1961년 ~ 현재)	35
1. 입법배경	35
2. 법제정비의 과정 및 내용	35
Ⅲ. 현행 지방교부세의 유형 분석	42
1. 보통교부세	43
2. 특별교부세	47
3. 분권교부세	53
4. 부동산교부세	59
5. 현행 지방교부세 관련법제의 특징과 개선과제	61
제 4 장 일본의 지방교부세 관련법제 분석	65
Ⅰ.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교부세	65
Ⅱ. 일본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교부원칙	65
1. 일본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의 의의	65
2. 지방교부세 제도의 운영원칙	66
3. 지방교부세의 산정	67
Ⅲ. 일본 지방교부세의 종류	68
1. 보통교부세의 총액과 산정기준	68
2. 특별교부세의 총액 및 산정기준	69
3. 지방교부세의 보정	70

IV. 지방교부세 산정 및 교부에 관한 관련행정기관 장의 의무	71
1. 제시정촌 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에 관한 도도부현지사의 의무	71
2. 교부세의 액의 산정에 이용한 자료에 관한 검사	72
V. 착오 및 부당교부된 금액의 환수	72
1. 착오 및 부당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환수절차	72
2. 관계행정기관의 권고	74
3.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신청	75
4. 감액 또는 반환된 교부세의 액의 조치	75
VI. 일본 법제의 특징과 평가	75
제 5 장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7
I. 지방교부세의 제도적 성과	77
II.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	78
1. 현행 지방교부세 유형의 적정성	78
2.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한계	79
3. 교부세의 부당운영 유인	81
4. 세수절감과 지방교부세제도의 연계(인센티브제도)	82
5. 특별교부세 제도의 불투명성 문제	83
6. 분권교부세 소요액의 과대산정 문제	83
7. 부동산교부세의 불균형성	85
8. 입법기술적 측면의 문제	85
III. 지방교부세제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86
1. 정책적 측면에서의 법제개선 방향	86

2.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89
3. 입법기술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93
참 고 문 헌	95
[부 록]	
일본 地方交付税法	99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대단히 낮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실에서 지방교부세는 지난 1951년 관련법제가 정비된 이래로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재원균형화와 재원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으로서 그 경비의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데 특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을 조정하는 기능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조정하는 기능을 더불어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필수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전반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대단히 커서, 지방교부세의 운영은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한 관건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수십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그 효용과 함께 폐단과 한계도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를테면 자의적인 집행으로 인해 투명성과 통제수단을 적절히 확보하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지적과 함께, 자치단체간에 교부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상의 제약으로 인해 추가적 재원 공여의 필요성이 높은 낙후 지역에 정책적 배려를 하기 어렵다는 상반된 문제점도 노출시키고 있다. 거기에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한 지방교부세의 부당운영 사례들이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대략적인 방향에 대한 합의도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그것이다.

이런 요청은 법제적 측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부세 운영의 법리적 근거를 규명하고 규범적 통제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입법정책

의 수립이 필요하며, 정부 역시 최근 국가재정 관련 주요 현안으로서 지방교부세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핵으로서 지방교부세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법적, 현실적 문제점들의 소재를 분석하고, 지방교부세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운영을 위해 수립되어야 하는 법적 원칙을 규명하며, 지방교부세의 교부주체으로서 국가 및 행정안전부, 교부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와 절차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제도의 내실화와 효율화 및 투명화를 제고시키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법제개선은 그간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돌이켜 보건대 그 과정은 큰 틀에서 보면 제도발전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번복과 부침을 거듭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지방교부세를 둘러싼 현안이 다분히 정책과 경제현실로부터 제기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법령개정 또한 그러한 정책적 결정의 후속과정으로 추진되어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재정학 내지 재무행정학을 중심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연구의 대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를 테면 지방교부세의 규모와 재원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거나, 유사한 맥락에서 지방재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이나 교부세 부과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그러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지방교부세액을 확대하는 맥락으로 전개되어 오기는 했지만 그런 지향점이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할 것인지는 또 정책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연구의 방향을 현행 지방교부세율이 적정한 것인지 산정방식이 타당한지에 맞추는 것은 나름대로 논의의 풍부화에 기여할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처방은 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결정과 계량적 분석도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결론의 도출은 지양하되, 보다 독립적이고 객관화된 법리적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적 측면에서 법제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절차적 공정성 및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구체적 개선방안의 도출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다만, 연구의 객관성과 과학적 합리성을 위해서는 전제적 고찰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제가 수립되어 온 궤적을 추적하고 현행 법제의 위치와 특징을 조명하는 작업이 선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법의 모델이 된 일본법제를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과 차이점을 규명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이를 토대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아울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결론에 대신하여 도출하게 된다.

제 2 장 지방재정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제도

I.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재정자립도

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규모와 대외 의존도

지방자치는 자주적인 재원의 확보 없이는 성공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자치제도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재원의 확충과 건전한 지방재정체계의 확립이 특히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안보 및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의 논리가 정책의 중심으로 잡으면서 중앙정부 국가중심의 재정편성과 운영이 이루어져 온 반면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 줄곧 지속되어 왔다. 이런 상황은 현재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세제 역시 국세의 비중을 매우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왔다. 이에 비하여 민주주의의 확산과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양과 질 모두에 걸쳐 급증하고 있어서 자체 역량만으로는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려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즐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2008년 현재 124조 9,666억원으로 국가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과 비교해 보면, 국가재정 195조 1,003억원(54.5%), 지방교육재정 37조 8,524억(10.6%)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3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98조 4,446억(78.8%), 특별회계가 26조 5,220억원(21.2%)을 차지하고 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77조 1,471억원(61.7%)이고,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7

1) 2007년도에는 전체 예산 중 국가재정이 54.8%, 지방재정이 34.8%, 지방교육재정이 10.4%를 차지하였었다.

조 8,195억원(38.3%) 수준인데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어서 의존재원이 없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것이 문제이다.

[표]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구 분	2007년(당초예산)	2008년(당초예산)	증가율
자체재원	69조 4,191억원	77조 1,471억원	11.1%
지 방 세	38조 732억원	43조 5,497억원	14.4%
세외수입	27조 8,509억원	30조 1,004억원	8.1%
지 방 채	3조 4,950억원	3조 4,970억원	0.1%
의존재원	42조 5,673억원	47조 8,195억원	12.3%
지방교부세	21조 4,084억원	24조 1,296억원	12.7%
국고보조금	21조 1,590억원	23조 6,899억원	11.9%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현황

주지하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자체적으로 조달가능한 재원의 비중을 의미한다. 산술적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을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눈 값²⁾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3.9%에 그치고 있다. 비록 2007년의 53.6% 보다는 0.3%p 증가한 것이지만, 세계개편이나 지방경제의 활성화 등 근본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고는 단기간에 극복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평균보다도 현저히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어서 자치단체간 편차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 본청으로 85.7%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전라남도의 경우는 가장 낮은 11.0%에 그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대기업의 본점이 다수 소재한 서울시 중구가 86.0%이고, 전남 완도군·신안군이 6.4%로 가장 낮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의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³⁾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가장 높은 곳은 역시 서울시 본청(92%)이고, 가장 낮은 곳은 역시 전라남도 본청(33.2%)으로 나타난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 과천시(90.4%)가 가장 높은 반면, 부산광역시 북구(36.4%)가 가장 낮다. 2008년을 기준으로 재정자주도의 전국평균은 79.5%로서 2007년과 동일하다.

이처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하든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하든 서울시나 수도권 도시들의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한데 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10% 내외에 그치는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 자체의 존립과 성공적 운영을 저해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세제가 국세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삼을 만한 항목이 많지 않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물론 이 격차는 주로 수도권의 자치단체와 비수도권 자치단체간에 형성되어 있다. 지방의 광역자치단체의 내국세수입은 서울특별시 일개 구의 그것보다도 작은 경우가 허다하다.

3) 재정자주도 =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이런 현상은 지방경제의 열악성에 주로 기인하지만 전국을 영업범위로 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본점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즉 일반제조업부터 금융기관, 심지어 항만사까지도 법인세를 납부하는 본점소재지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결과, 지방에서 돈을 벌어서 본점소재지 세무당국에 납부하게 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균형발전논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의 재정재원을 세수입만을 기준으로 충당하는 것은 이 같은 재정현실을 감안하면 이상적이거나 현실을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대기업의 지방이전이나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같은 근본적 상황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중앙정부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소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과 유형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균형을 시정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원보장마련은 지방재정이나 자치행정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개편이나 경제구조조정이외에 각국이 채용하고 있는 제도가 곧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이다.

일면 수입이 균일하지 않은 경제주체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제적 환경을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재정조달능력 면에서의 근원적 격차와 그 원인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불가피성은 어느 법역에서든 인정되고 있다. 다만 각국에서 제도를 일컫는 명칭과 특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과 유형

이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비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교부하는 재원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동급간 자치단체간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간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일련의 제도를 모두 일컫게 된다.

이 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나 불공평(vertical fiscal imbalance or inequ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과 불공평(horizontal fiscal imbalance or inequ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상 지방재정조정제도로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운영되고 있다.⁴⁾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제도이면서,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운영상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된다는 점에서 교부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대단히 선호도가 높은 재원이기도 한다.

[표] 현행 지방재정조정 제도 현황⁵⁾

구 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목 적	자치단체 재원보장 재원불균형 완화	자치단체 특정사업 지원	자치단체 재정기반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4) 광의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07』, 286면.

5) 지방양여금은 1991년 도입 이후 국세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도로정비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업의 범위와 규모 확대과정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적 성격의 사업 등이 포함되면서 제도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권 신장 측면에서 제도개편이 논의되었다.

구 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 원	내국세의 19.24%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예산으로 계상	주세 100%, 과밀부담금, 개발지역회손부담금, 농특세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재원성격	일반재원+(특정재원)	보조목적사업의 용도에 한정	사업별 용도에 한정
유 형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

Ⅲ. 지방교부세 제도의 취지와 기능

1. 제도의 취지

재정수요에 비하여 행정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되는 문제이지만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경우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재정수요의 부족분이 유독 커서 언제나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중앙정부로 부터의 의존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재정현실에서 지방자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내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재정에 이전·지원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재정조정제도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지방교부세는 이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형태로서 지난 1951년에 도입된 이후로 국세수입의 일부

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기능하며 자치행정의 존립과 행정서비스의 지속발전을 가능케 하여 온 대표적인 재정조정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 재원은 지난 2006년 이래 지방교부세 재원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재원 및 전전연도 내국세의 정산액으로 구성되고 있다. 2008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4조 1,296억원이 지방교부세 명목으로 각 자치단체에 배분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교부세액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부분을 기준으로 산정, 배분되기 때문에 전체액수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지되어 있듯이 내국세는 국세의 세목 중에서 관세와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농특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추경예산액에 의하여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지방교부세 역시 증감이 된다. 또한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증액 교부를 할 수 있다.

2. 지방교부세의 기능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지방자치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전체 국가예산의 효과적 집행이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가 수행하는 제도적 기능 또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이 기능은 현행 법제 속에서도 그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적에 비추어 보면 교부세를 통해 기대하거나 실제로 교부세가 기능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추출해 볼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기능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격차가 큰 나라의 경우에는 보건이나 문화를 포함한 최소한의 행정서비스가 국민전체에 고루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상존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교부세는 거시적 측면에서 교부세 총액을 내국세의 일정율로 법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적 필요최저의 행정서비스 수준(소위, national minimum)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⁶⁾

아울러 미시적 측면에서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기준설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재원(부족재원)을 보장한다.

(2)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조정기능(혹은, 재원의 균형화)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재정균형화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전국적으로 징수되는 국세수입에 의존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국세수입은 기업 및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을 주된 징수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 결과 교부세는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는 도시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위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균형화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⁷⁾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큰 우리나라에서 이 기능은 특히 큰 의미를 가진다.

6) 林 宏昭·橋本恭之, 『地方財政(第2版)』, 中央經濟社, 2002. 131頁.

7) 前掲書, 133頁.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기능

한편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의 일정비율을(19.24%) 교부세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배분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⁸⁾ 대개의 경우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출해야 할 재정수요액과 조달가능한 재정수입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조세수입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약 8:2로서⁹⁾ 대부분 국세중심으로 되어 있어 지방에 배분되는 세입이 특히 작다. 요컨대 단계를 달리하는 정부간 세출기능의 배분과 세원배분의 불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 같은 수직적 불균형은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3. 재원의 성격

무엇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지방교부세는 국세로 일단 징수된 세의 일부가 자치단체공유의 ‘稅’가 되어 세수가 부족한 단체에 객관적 기준에 의해 배분되는, 환언하면 ‘국가가 지방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지방세(고유재원)’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지방교부세는 또한 지방의 일반재원이기도 하다. 지방교부세의 사용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

8) 前掲書, 133~134頁.

9) 2006년을 예로 들면 79.3 : 20.7로 나타난다.

10) 이용환·박충훈, 『재정조정제도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5.11, 12면.

목적은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세와 함께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IV. 지방교부세 운용 현황

지방교부세 재원은 2008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총 24조 1,296억원에 이른다. 그 중 보통교부세가 90%가량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편성되는데, 내국세 중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농특세)와 주세(특별회계 사용재원)는 제외하고 있으며 정부 추경예산 가운데 내국세의 증감 여하에 따라 지방교부세 증감도 뒤따르고 있다.¹¹⁾ 최근 지방교부세의 연도별 변화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현황

(단위: 억원)

연 도	총 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증액교부금
1990	2,764,654	2,304,893	230,574	-	229,187
1991	3,452,402	3,053,265	305,411	-	93,726
1992	3,927,749	3,533,726	353,373	-	40,650
1993	4,413,085	4,011,896	401,189	-	-
1994	4,724,569	4,295,062	429,507	-	-
1995	5,484,226	4,985,661	498,565	-	-
1996	6,377,734	5,797,940	579,794	-	-
1997	6,798,732	6,142,666	614,266	-	41,800

11)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IV. 지방교부세 운용 현황

연 도	총 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증액교부금
1998	7,039,226	6,353,842	635,384	-	50,000
1999	6,710,770	5,782,518	578,252	-	350,000
2000	8,266,546	7,468,678	746,868	-	51,000
2001	12,288,992	11,119,539	1,111,953	-	57,500
2002	12,259,400	10,884,910	1,088,490	-	286,000
2003	14,910,674	12,238,522	1,223,852	-	1,448,300
2004	14,469,054	13,012,867	1,301,287	-	154,900
2005	19,484,517	17,927,570	711,566	845,381	-
2006	20,346,498	18,604,343	739,764	1,002,391	-

위 표에서도 확인되듯이 지방교부세의 규모는 그간 꾸준히 확대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내국세 자체의 규모가 매년 신장한 것도 이유이지만 교부세 교부율 자체의 변화도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테면 2000년 국민의 정부에서 교부세 교부율은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인상되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양여금 및 국고보조사업의 교부세 전환 등을 통해 교부세율을 2004년에 15%인 14.1조원에서 2005년에는 18.3%로 18.6조 원으로, 2006년에는 다시 19.24%로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표] 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율

1968년 이전: 특정세목의 일정을
1969년~1972년: 17.6%
1973년~1982년: 법정률유보
1983년~1999년: 13.27%
2000년~2004년: 15%
2005년: 19.13%
2006년~현재: 19.24%

보통교부세의 배분 현황을 보면 교부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총 166개이며 비수도권에 총액의 92%를 배분하고 있다.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자치단체는 현재 11개로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광역시 가운데는 인천광역시,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 시단위에서는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용인시, 화성시 등이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¹²⁾ 반면 군(郡) 단위에서는 불교부단체가 한 곳도 없다.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60조 대도시행정의 특례 규정에 따라 특별·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 산정하고 이를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일괄 교부한다.¹³⁾

[표] 2007년도 지방교부세의 시도별 배정내역

(단위 : 억원)

단체별	계	市道분	市분	郡분
계	198,421	47,341	71,620	79,460
부산	2,895	2,378	-	517
대구	3,412	2,650	-	762
인천	1,458	-	-	1,458
광주	2,935	2,935	-	-
대전	1,178	1,178	-	-
울산	1,456	1,125	-	331
경기	13,205	-	10,044	3,161
강원	21,819	4,005	8,399	9,415
충북	15,499	3,208	4,518	7,773

12) 부천시는 2007년부터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대상자치단체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불교부단체는 12개에서 현재 11개로 축소되었다.

13)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

IV. 지방교부세 운용 현황

단체별	계	市道分	市分	郡分
충남	17,262	3,121	6,109	8,032
전북	22,567	4,762	9,970	7,835
전남	31,167	5,995	6,813	18,359
경북	32,571	6,168	14,719	11,684
경남	25,112	3,931	11,048	10,133
제주	5,885	5,885	-	-

* 불교부단체 (총 11개) = 광역단체(3; 서울, 인천, 경기), 기초단체(8; 수원, 안양, 성남, 안산, 고양, 과천, 용인, 화성)

제 3 장 지방교부세 관련법제의 연혁과 현행제도의 문제점

I. 지방교부세법 제정 이전의 관련 법제

1. 임시지방분여세법 시대(1951년)

(1) 입법배경

지방교부세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1951년 4월 1일 제정된 「임시지방분여세법」¹⁴⁾을 기원으로 한다. 당시 지방재정은 규모나 세입면에서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중심의 시·읍재정과 농촌중심의 도·면 재정간에는 심한 재정력의 격차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다만 이 법은 1951년에만 운용키로 되었던 한시법이었다.

(2) 동법의 내용

분여세총액은 동연도 지세 및 영업세예산액의 1,000분지 346.8이내로 하되 1,000분지 123.9를 저하하지 못하였다. 일반분여세는 분여세총액의 1,000분지 740, 특수분여세는 분여세총액의 1,000분지 260으로 규정하였다. 일반분여세는 서울특별시, 도분여세와 시분여세 및 읍면분여세로 구분하고 그 분여율은 다음과 같다.

- i> 서울특별시, 도 1,000분지 83
- ii> 시 1,000분지 84.7
- iii> 읍, 면 1,000분지 822.3

14) 1951년 4월 1일 법률 제192호 공포.

한편 특수분여세는 서울특별시, 도 및 시읍면의 청사수리, 사무복구 기타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분여하였다. 분여세는 년 4회에 나누어 교부하였다. 서울특별시 및 도일반분여세는 제1종, 제2종, 제3종 분여액의 3종으로 하였는데, 제1종, 제2종, 제3종 분여액의 분여률은 각각 서울특별시 및 도분여세총액의 100분의 80, 100분의 10 및 100분의 10으로 하였다. 제1종 분여액은 공무원정원에 일정한 봉급 및 사무비의 소요액을 승한 액에 안분하여 분여한다. 제2종 분여액은 단기4284 연도 서울특별시 및 도의 과세목표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삭로 제한액이 전국 일인당 평균지방세담세액보다 부족한 액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를 승한 액에 안분하여 분여한다. 제3종 분여액은 재정결함 기타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분여한다.

시읍면일반분여세는 시분여세와 읍면분여세로 한다. 시분여세는 시에, 읍면분여세는 읍면에 분여한다. 시읍면일반분여세의 분여방법은 서울특별시 및 도일반분여세 규정을 준용하였다. 각 시읍면의 분여세액은 도에서 산정하였다.

2. 지방분여세법 시대(1952년 ~ 1958년)

(1) 입법배경

임시지방분여세법이 폐지되자 1952년 이를 대체한 「지방분여세법」을 제정·실시되었다. 동년 4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예 따라 종전의 지방분여세 재원이었던 영업세 부가세가 지방세로 복원됨에 따라 재원의 변동이 불가피해져서 1954년 동법을 부분 개정하였다. 동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동법의 내용(재원, 분여율 및 분여방법 등)

먼저 지방분여세 재원은 종전 당해연도 지세 및 영업세액의 1,000분의 346.8 이내로 하여 1,000분의 133.9를 하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제2종 토지수득세액 및 영업세액의 100분의 15로 하였다.

한편 「지방분여세법」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분여세총액을 단체별로 구분하여 서울특별시와 도는 100분의 20, 시는 100분의 10, 읍·면은 100분의 70으로 하였으며, 전시 중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상호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종전의 특수분여세)에 대한 분여율은 당해단체 분여세액의 각기 100분의 30, 100분의 15, 100분의 15, 100분의 40으로 하였다.

보통분여세(제1종, 제2종)의 분여방법에 관해서는 제1종 및 제2종 모두 종전의 제2종 분여방식과 동일한 근본취지에 입각하여 산출하되, 단지 제1단위세목과 제2단위세액의 산출에 있어서 전자는 당해연도의 제1종 토지수득세 환부금과 호별세·사옥세·임야세의 징수에 산액의 합산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후자는 보통세 징수액산액에서 제1종 분여세의 산정기준으로 된 세목의 징수액산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임시지방분여세법과 분여방법이 동일했다. 한편 특별분여세(제3, 4종)에 관해 「지방분여세법」에서는 제3종 분여세는 재정결합액에 안분하고, 특수분여세는 제4종분여세로 개칭하였다.

지방분여세의 분여율은 동법 제4종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도는 100분의 20, 시는 100분의 10, 읍·면은 100분의 70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지방재정의 정상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고, 또한 전시중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

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1954년 개정법

동법은 1954년 4월 14일 법률 제333호로써 개정되었다. 종래분여세의 재원은 제2종 토지수득세액과 영업세액의 100분의 15이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제1종 토지수득세액의 1,000분의 88, 제2종 토지수득세의 100분의 50, 유흥음식세액의 100분의 30으로 개정하였다.

아울러 단체별 분여율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서울특별시 및 도는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시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0으로, 읍·면은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75로 조정하였다. 또한 종별 분여율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1종 분여율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제2종 분여액은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제3종 분여액은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제4종 분여액은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5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의 신설을 보게 되었으므로, 제1종 단위세액산정에 있어서 동부가세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래에는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지사가 산정하도록 한 것을 내무부장관이 직접 산정하도록 개정하였다.

[표] 임시지방분여세법과 지방분여세법의 비교

임시지방분여세법	지방분여세법	동 개정법
(재원) 당해연도 지세·영업세 예 산액의 상한, 346.8/1000 하한, 133.9/1000	제2종 토지수득세 · 영업세예산액의 100분의 15	제1종토지수득세의 88/1000 제2종토지수득세의 50/100 유흥음식세의 30/100

I. 지방교부세법 제정 이전의 관련 법제

임시지방분여세법	지방분여세법	동 개정법
<p>(종류·분여율)</p> <p>일반분여세 1000분의 740</p> <p>단체별</p> <p> 도에 83/1000 시에 84.7/1000 읍면에 823.3/1000</p> <p>종별</p> <p> 1종 80/100 2종 10/100 3종 10/100 특수분여세 260/1000</p>	<p>특수분여세를 없애고 1,2,3,4종으로 나누다.</p> <p>단체별</p> <p> 도에 20/100 시에 10/100 읍면에 70/100</p> <p>종별</p> <p> 1,2,3,4,각각 30/100, 15/100, 15/100, 40/100</p>	<p>단체별</p> <p> 도에 15/100, 시에 10/100 읍면에 75/100</p> <p>종별</p> <p> 20/100, 10/100, 30/100, 40/100</p>
<p><분여방법></p> <p>1종은 봉급, 사무비액</p> <p>2종은 인구와 과세목표액</p> <p>3종은 재결결함 기타</p> <p>특수는 특수사정 등을 참작하여 안분분여함</p>	<p>앞의 것과 같음 (특수가 4종으로 변함)</p>	<p>앞의 것과 같음</p>

3.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시대(1959년 ~ 1961년)

(1) 입법배경

지방분여세법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방분여세를 통해 배분되는 재원자체가 빈약했고 분여방식도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특히 여유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분여액을 교부받은 반면 재정이 열

악한 지방은 분여액이 적게 배분되는 등 재정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중앙관장사무의 지속적인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재정수요의 급증한 것도 제도운영의 난관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1953년 3월 지방분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여건 하에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국가로부터 교부받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¹⁵⁾을 제정하여 1961년 까지 운영해 왔다.

(2) 동법의 내용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의 재원은 1호, 2호, 3호 재원으로 구분하고,(법 제2조) 1호 재원은 종전 지방분여세의 재원인 유흥음식세액의 40/100(종전에는 30/100), 영업세·입장세·전기가스세액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으며, 2호 재원은 지방분여세의 재원이었던 제1종 토지수득세액의 8.8/100과 제2종 토지수득세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다. 또한 3호재원은 총기준 재정수입액이 총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액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금액으로 하였다.

둘째, 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고, 보통교부금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총액을 기초로 하여 그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총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도록 하였다(법 제4조).

15) 1958. 3. 11 법률 제482호 공포.

II. 지방교부세법 시대(1961년 ~ 현재)

1. 입법배경

1961년 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지방행정분야에서도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고, 행정구역의 개편과 지방행정조직의 개혁 등으로 지방재정구조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계기로 지방재정조정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종래 불합리하였던 교부금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을 폐지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재원을 확보하고 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을 제정하였다.

2. 법제정비의 과정 및 내용

동법은 196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현재까지도 운용 중에 있는데, 그 운영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1963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기존 교부세 재원의 일부가 교육재정교부금재원으로 이관되었고, 1966년 8월에는 국세부가세가 폐지됨에 따라 교부금 상향조정을 위해 국세부가세 상당 재원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흡수하게 되었던 점이 특기할 만하다. 하지만 이후 1973년 8월 3일부터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에 따라 매년도 국가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는 교부액제로 운영되었다. 그 후 1981년 12월 11일자로 ‘8·3조치’가 폐지되면서 지방교부세 재원의 총액산정을 당해 연도 내국세총액의 13.27%로 법정화하여 적용하다가 1999년 말 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하여 적용되어 왔다.

(1) 1961년 제정 지방교부세법¹⁶⁾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을 폐지하는 한편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동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는 매년도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되었다. 제정 당시부터 지방교부세법은 지방교부세를 “國家가 財政的 缺陷이 생기는 自治團體에 交付하는 金額으로 정의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한정하였다. 보통교부세는 매연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되도록 하였다.

(2) 1963.12.5. 개정법¹⁷⁾

종래 각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 오던 중·고등학교교직원봉급 및 독립대학경비가 지방교육교부세법의 제정으로 일반회계에서의 부담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감축시켜야 하고 아울러 현행법의 미비점인 지방교부세의 정산규정을 명문화하여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재원중 입장세를 제외하고, 주세중 탁주·약주세의 100분의 85를 보통교부세의 재원으로 하던 것을 100분의 43만을 재원으로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도 증감시키도록 하여 지방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16) 법률 제931호.

17) 법률 제1460호.

(3) 1965.8.23. 개정법¹⁸⁾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영업세와 전기가스세액의 100분의 40과 주세중 탁주와 약주세의 100분의 43에서 영업세, 전기가스세와 탁주세 및 약주세를 제외한 주세의 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특별교부세의 재원에 있어서는 종전에 영업세와 전기가스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던 것을 보통교부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였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당해 연도의 영업세·전기가스세 및 주세(탁주세 및 약주세를 제외한다)의 예산액과 당해 연도의 결산액과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익익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게 하였다.

한편 지방교부세의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수부지구의 특수사정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4) 1968.7.15. 개정법¹⁹⁾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율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60으로 변경하였다.

(5) 1982.4.3. 개정법²⁰⁾

종전에 내국세 총액의 17.6%(보통교부세 16%, 특별교부세 1.6%)로 되어 있던 지방교부세율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1972. 8.2,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에 의하여 따로 국가예산으로 정하여 왔으나, 긴급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재정의 현실적 여건을

18) 법률 제1709호.

19) 법률 제2031호.

20) 법률 제3557호.

감안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3.27%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되, 그 중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으로, 특별교부세는 11분의 1로 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6) 1988.4.6. 개정법²¹⁾

특별시·직할시의 자치구에 대한 지방교부세는 이를 특별시·직할시에 대한 지방교부세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교부세의 결정에 대한 통지와 그 산정기초등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하였다.

(7) 1990.4.7. 개정법²²⁾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방위세 및 교육세 제외)총액의 100분의 13.27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되, 내국세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이와 같은 내국세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액을 차차년도의 국가결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는 다음 연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이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1990.12.31. 개정법²³⁾

1990년까지는 내국세 중 토지초과이득세·방위세 및 교육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3.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였으나 1991년부터 방위세가 폐지되고 국세와지방세의 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15%, 전화세의 전액 및 교육세의 전액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산정재원인

21) 법률 제4008호.

22) 법률 제4223호.

23) 법률 제4272호.

내국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조정하였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내국세 중 토지초과이득세, 방위세 및 교육세를 제외하던 것을 내국세 중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9) 1999.12.28. 개정법²⁴⁾

지방교부세제도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있어 국세 위주로 운영하면서 지방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1983년에 정하여진 법정교부율로서 내국세총액의 100분의 13.27의 금액을 가지고는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 이후 주민의 기대욕구와 지역개발수요의 증대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법정교부율을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여 열악한 지방재정기반을 확충·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0) 2004.1.29. 개정법²⁵⁾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에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던 도로정비사업 등에 지방교부세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재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제도의 객관적 운용을 위하여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축소하고 증액교부금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개정을 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를 교부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총액의 15%에서 18.3%로 상향조

24) 법률 제6059호.

25) 법률 제7126호.

정하는 한편(법 제4조제1항),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현행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에서 100분의 96으로 확대하고, 특별교부세는 11분의 1에서 100분의 4로 축소하였다(법 제4조제2항). 아울러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법정분 지방교부세액외에 별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증액교부금제도(제4조 제3항)를 폐지하였다.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동사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미리 교부세 총액에서 공제하여 그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법 부칙 제2항)

(11) 2004.12.30. 개정법²⁶⁾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를 신설하고(제3조) 분권교부세의 배분 방식 등을 정하였다. 분권교부세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양된 종전의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보다 용이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분권교부세가 신설됨에 따라 분권교부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8.3%에서 19.13%로 상향조정하였다. 분권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방법과 관련해서는 분권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가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은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수 등의 통계자료,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내역을 통지하도록 하였다(법 제9조의2 신설).

26) 법률 제7257호.

한편 제도의 취지상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이 정착될 때까지만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법에서는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운영한 후 폐지하여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 하도록 하였다 (법 부칙 제2항).

(12) 2005.1.5. 개정법²⁷⁾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에 따라 국세로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세액 전액을 예산에 매년 계상하여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하여,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13) 2005.12.31. 개정법²⁸⁾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증가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세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재산세와 거래세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지방재정확충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였다.

[표] 지방교부세제도 연혁

○ 1951년 : 임시지방분여세제도로 출발
- 국세 중 특정세목(지세 등)의 일정을 교부 (34.68%)
○ 1959년 : 지방재정조정교부금제도 운영
- 국세 중 특정세목(영업세 등)의 일정을 교부 (40%)
○ 1962년 : 지방교부세제도 운영
- 국세 중 특정세목(영업세·주세 등)의 일정을교부(40%)

27) 법률 제7333호.

28) 법률 제7844호.

- 1964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분리
 - 1969년 : 내국세 총액의 17.6%(보통 16%, 특별 1.6%) 법정율교부
 - 1973~82년 : 『8.3 조치』로 법정율 유보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대통령 긴급명령』
 - 1983년 이후 : 『8.3 조치』의 폐지로 법정율 부활
 - 내국세 총액의 13.27% 법정율 교부
 - 증액교부금제도 신설
 - 2000년 : 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조정
 - 내국세 총액의 13.27% → 15%
 - 2005년 : 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조정
 - 내국세 총액의 15% → 19.13%
 - 증액교부금·지방양여금제도 폐지
 - 분권교부세 신설(내국세의 0.83%)
 - 2006년 : 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조정
 - 내국세 총액의 19.13% → 19.24%
 - 분권교부세율 인상 0.83% → 0.94%
- ※ 부동산교부세 신설 (법정율 이외 종합부동산세 수입으로 배분)

Ⅲ. 현행 지방교부세의 유형 분석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3조는 지방교부세의 유형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등 네 종류로 설정하고 있다.²⁹⁾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교부세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한시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29) 이하의 내용은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06의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한 것이다.

1. 보통교부세

(1) 의 의

보통교부세는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하고 지방세 등 일반재원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일반재원으로 보전하는 교부세이다.(법 제6조) 일정한 공식에 의해 산정, 배분된다는 점, 재원의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2) 보통교부세의 재원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재원 법정율인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분권교부세 법정율 0.94%를 제외한 재원 즉, 내국세 총액의 18.3%중에서 96%(4%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3) 재원배분의 기준 및 방법

보통교부세의 재원배분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부족분을 교부한다(법 제6조 제1항). 자치구는 특별·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 산정하고, 이를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일괄 교부한다(법 제6조 제1항 단서).

[그림] 보통교부세 배분방법

$$\begin{array}{ccccccc}
 \boxed{\text{기준재정수요액}} & - & \boxed{\text{기준재정수입액}} & = & \boxed{\text{재정부족액}} & \ni & \text{보통교부세} \\
 & & & & & \uparrow & \\
 & & & & & & \text{(조정을 적용)} \\
 \text{(9개측정항목·26개} & & \text{(보통세수입의 80\% +} & & & & \\
 \text{세항목별 기초수요} & & \text{보정수입+수입자체노력)} & & & & \\
 \text{+ 보정수요 ±} & & & & & & \\
 \text{수요자체노력)} & & & & & &
 \end{array}$$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법 제7조 제1항)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i> 도서·벽지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ii>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i> 단위비용의 획일적인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한편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에 대응한 개념으로, 보통세의 수입액으로써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기준세율로써 산정한 표준적인 재정소요액이다.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 하며, 기준세율로 산정한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을 하게 된다(법 제8조 2항 및 3항).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수요액과 보정수요액 및 자체노력금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준재정수입액도 마찬가지로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 자체노력금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007 보통교부세 산정·배정액

(단위 : 억원)

구 분	기준재정 수요액	기준재정 수입액	재정부족액	교부세 산정액
합 계 (불교부단체 포함)	395,017 (565,774)	177,296 (357,456)	217,721 (208,318)	198,421
서 율	(89,689)	(90,564)	(△8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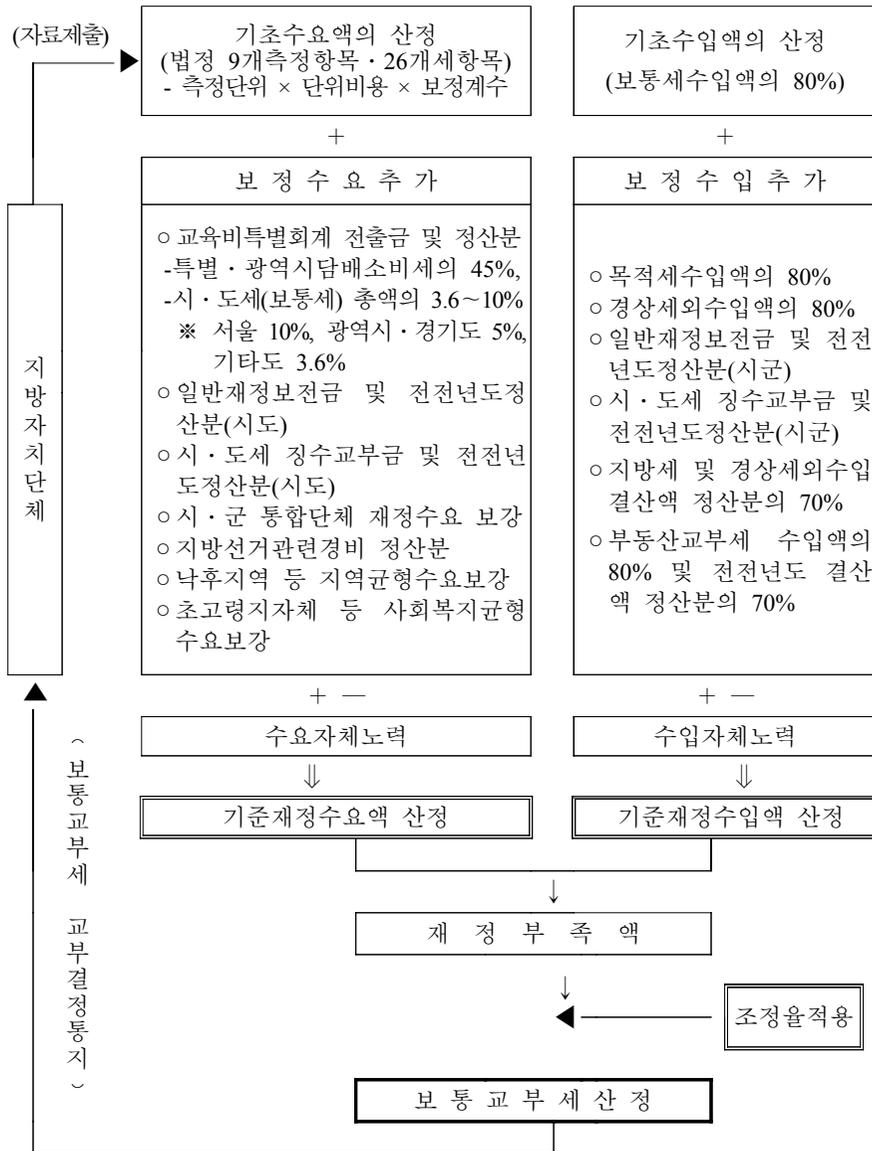
Ⅲ. 현행 지방교부세의 유형 분석

구 분	기준재정 수요액	기준재정 수입액	재정부족액	교부세 산정액
광역시 분	65,807 (80,299)	54,185 (68,843)	11,622 (11,456)	10,265
도 분	70,972 (111,302)	35,698 (77,310)	35,274 (33,992)	37,076
시 분	147,289 (173,535)	66,285 (99,611)	81,004 (73,924)	71,620
군 분	110,949	21,128	89,821	79,460

※ 교부세 산정액에는 별도 감액·보전분이 포함된 금액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원부족이 많거나 적거나에 관계없이 표준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재원충족율에 근접하도록 지원된다. 그렇다고 하여 보통교부세를 통한 재원충족율을 100%로 하는 것은 아니며, 2008년의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근접한 89.2%를 충족하도록 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따라서 보통교부세의 구체적인 교부액은 자치단체의 규모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다만, 비율만을 놓고 보면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도덕적 해이문제나 재정자립도 개선인센티브의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가 있다.

[그림] 보통교부세 배분의 흐름도



2. 특별교부세

(1) 의 의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교부하는 교부세의 일종이다.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확실성을 보완하여 적기에 적절한 교부세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특별교부세의 재원 및 배분방법

특별교부세는 현행법상으로는 지역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로 구분되어 집행된다. 지역현안수요는 전국체전, 행정구역개편 등 국가적 행사,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재정수요를 의미하고, 재해대책수요는 해당 연도 중에 발생한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한 재정수요를 말한다(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1호 및 2호).

특별교부세 교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교부 목적의 타당성, 투자효과, 재원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특별교부세 재원은 지방교부세 총액에서 분권교부세액과 과거 지방양여금의 도로사업 보전분을 차감한 것으로 교부세 총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법 제4조).³⁰⁾

특별교부세의 대상사업은 종전에 시책사업, 지역개발사업, 특정현안사업, 지역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 등 5개 사업이었다가,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시책사업, 지역개발사업, 특정현안사업은 폐지하여 현재는 지역현안사업과 재해대책사업의 2개 사업만 존속하도록 하였다.³¹⁾

30) 특별교부세는 종전 지방교부세의 11분의 1에서 100분의 4로 축소되었다.

31) 2004.1.29. 지방교부세법 개정.

재원 역시 9.09%에서 4%로 감축되었다.

아울러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특별교부세는 배분기준 모호성, 지역별 형평성, 집행과정의 불투명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바 축소는 타당한 정책방향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³²⁾

[표] 2007년 기준 특별교부세의 구성 및 재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비 율	규 모	비 고
총 계		8,266	
지역현안수요	50%	4,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전준비 등 전국행사 지원 • 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
재해대책수요	50%	4,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해 · 태풍 등의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사업 재원보전
우수단체 재정지원	재해대책 수요잉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 재정실적 우수자치단체

(3) 특별교부의 요건 및 유형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i>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ii>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야 하고, iii> 재해로 인한 교부의 경우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어야 한다(법 제9조).

이런 요건을 토대로 할 때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은 ①지역현안수요 ②재해대책수요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후자의 경우

32) 이원희,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지방교부세백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7.7, 410면.

에 한해 재해대책수요 잔여액 예상분은 우수자치단체 재정지원에 사
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다.

[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비교

구 분	보 통 교 부 세	특 별 교 부 세	
성 격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 정수준확보를 위하여 재정 부 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적 재원	재해발생·국가행사 등 지방자 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 전하는 특별한 재원	
재 원	{내국세 총액 × 18.3%} 의 96/100	{내국세 총액 × 18.3%} 의 4/100	
(2007년 규모)	20조 6,921억원	8,267억원	
교부요건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 요액에 미달하는 단체를 대상 으로 교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으로 포착 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 생시 교부	
(2007년 대상)	* 광역 3, 기초 8개 불교부	* 모든 자치단체가 교부대상임	
기 타	용도제한	불 가	가 능
	배정시기	전년도 말일까지 결정 (예산은 분기별, 자금은 월별 배정)	수시배정

(4) 교부대상 재원별 운영기준

1) 지역현안수요

현행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특별한 지역현안수요(이하 “지역현
안수요”라 한다)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국가적 행사,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토록 되어
있다.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교부세 재원규모는 특별교부세 총액의 50%
해당하는 4,133억원이다. 한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서 포착

할 수 없는 국가행사 또는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로는 국가적 행사관련수요, 행정구역개편수요, 지방재정부담수요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적 행사관련수요는 기반시설정비 등에 지원하되, 단, 대회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전국체육대회 재정보전은 대회개최 전년도부터 2년에 걸쳐 지원하게 된다. 또한 중점지원대상 사업과 부적합 사업을 구분, 교부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은 배제한다. 중점지원 사업은 문화복지·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며 민간이전사업, 축제 등 행사경비 등은 지원부적합 사업으로 분류된다. 한편 행정구역개편, 지방재정부담 및 기타 주요정책사업수요는 주요사업 추진 사업비중 지방비부담액 과다로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지방공공시설의 신설·복구·확장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는 자치단체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하는 경우 심사후 지원하게 된다. 사회복지사업, 도시개발사업, 공해방지사업, 문화재보존사업, 하천관리사업, 교통관리사업, 농업진흥사업, 공공체육사업, 지방상수도사업, 도로교량사업, 수산진흥사업, 그 밖의 주요정책, 지방하수도사업, 보건위생사업, 문화예술사업 등이 그에 해당한다.

교부시기는 신청사업, 재원 등을 고려하여 시도, 시군구별 일괄 배정한다.

2) 재해대책수요

한편 시행령상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이하 “재해대책수요”라 한다)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이 경우의 재원규모 역시 특별교부세 총액의 50% 해당하는 4,133억원

이며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자치단체 중재해로 인한 응급·항구복구에 따른 사업비로서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된다.

교부시기는 응급복구수요의 경우 재해발생시 자치단체 신청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여 교부하며, 항구복구수요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여름철 항구복구계획 수립 후(10월말) 교부한다.

교부방법은 응급복구 수요의 경우 응급복구 및 이재민구호에 긴급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항구복구 수요의 경우 재해복구소요액중 지방비부담액이 과다한 경우 지방비소요액의 일부를 보전하되, 피해지역의 피해규모 및 재정력을 감안하여 지원한다.

3) 우수자치단체 재정지원

한편 지난 2005년부터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재해대책수요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토록 하고 있다.

재원규모는 재해대책수요 재원의 잉여 예상분(10월말)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재정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테면, 주민복지·지역경제·지역개발·민원서비스·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치단체 및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치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교부방법 및 교부시기는 평가결과 혹은 객관적 우수사례에 따라 배정하되, 재해대책재원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시점으로, 여름철재난특별기간 종료(10월 말) 후 교부한다. 아울러 평가 및 인센티브 운영 계획 사전 고지로 자치단체장 관심고취 및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 유도 등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고 있다.

(5) 특별교부세의 집행 및 관리

1)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이행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조건 또는 용도제한이 있는 사업의 경우 당해조건 및 용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교부조건이나 용도위반 사용시 반환조치 또는 다음연도 교부세에서 감액조정 된다.

2) 집행계획의 수립

예산주관부서는 당초 사용용도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연도내에 사업이 완결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연차별 계획에 의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자체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사업비 부족에 따른 미완공을 이유로 계속지원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교부액이 신청액에 미달된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부족한 사업비는 자체재원으로 가급적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예산반영 및 집행

특별교부세는 교부목적에 따라 예산에 반영, 집행하여야 한다. 연도 중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는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 직접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대적 경비로는 집행되지 않도록 한다. 예산주관부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조하여 사업규모, 계약(또는 입찰)금액,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특별교부세사업 집행대장(별지 서식 제4호)에 기록 관리토록 한다.

4) 용도변경 및 잔액 사용계획 승인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 변경으로 당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사업장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부재원을 반납하거나 용도변경 승인(별지 서식 제5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교부세사업 집행결과 잔액(연도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재원 제외)에 대하여는 별도의 집행잔액 사용계획(별지 서식 제6호)을 승인 받은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자치단체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시행규칙 제7조 제2항).

3. 분권교부세

(1) 도입의 취지와 성격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금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점, 즉 대상사업 선정의 자율성 결여, 소액분산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아울러 분권교부세 도입 이전 총 533개의 국고보조사업(사업비 약 12조 3천억원) 중 사회복지, 문화관광, 교육부문 등 149개 사업(사업비 약 9,600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0.83%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원을 분권교부세를 통해 확보하였다.³³⁾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을 위한 효율적인 이전 통로가 마련되었으며, 분권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에 대한 자기책임의 명확화가 가능해졌다.

33) 따라서 384개 국고보조사업은 현재도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다.

분권교부세 교부규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내국세총액의 0.94%의 비율로 2006년 1조 24억원, 2007년에는 1조 1,053 억원으로 각각 확대되었다.

[표] 분권교부세 운용현황

구 분	'05	'06	'07	증 감
법정률	내국세 총액의 0.83%	내국세 총액의 0.94%	좌 동	
금 액	8,454억원	1조 65억원	1조1,053억원	988억원 증

분권교부세는 보통·특별교부세와 함께 지방교부세에 속하며, 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일반재원이다. 운용기한은 2005년~2009년까지의 5년이며 2010년 이후로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이다.

(2) 분권교부세의 유형 및 교부방법

분권교부세 수요는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된다. 분권교부세 총재원 중 먼저 관계부처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비경상적 수요를 확정하고 나머지를 경상적 수요로 간주하고 있다.

경상적 수요는 대상 사업의 성격상 일정한 수준의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7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평균 보조금 교부액과 이양사업 관련 통계 등을 이용한 산식을 통해 산정한다. 그 산정 방법은 광역단위로 이양사업을 11개 산정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식화하고 자치단체별 평균교부액 비중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표] 경상적수요 사업 77개

산 정 항 목		대 상 사 업	
1. 사 회 복 지	① 노인복지비	경로당 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경로당 활성화
	② 장애인 복지비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의료재활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장애인 체육관 운영 편의시설설치 시민축진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
	③ 그 밖의 복지비	아동시설 운영 아동급식 가정위탁양육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모자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노숙자보호 쪽방생활자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연기관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입양기관 운영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공공보건인력개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제 3 장 지방교부세 관련법제의 연혁과 현행제도의 문제점

산 정 항 목		대 상 사 업
2. 문화관광	① 문화재비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도 무형문화재(공개행사)
	② 문화관광비	공공도서관 운영 문화학교 운영 농어촌 공공도서관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청소년상담실 운영
3. 농림수산	① 농업비	농업인자녀 학자금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농가도우미 지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방자치단체 종자 공급
	② 농촌진흥비	지역특화사업 시범 영농4H시범영농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도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
	③ 임업비	보호수 정비
	④ 수산비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토산어종 치어방류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4. 공공근로	공공근로비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5. 여성인력개발	여성인력개발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비경상적 수요는 매년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원하던 사업으로서 평균 보조금 교부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배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7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표] 비경상적수요 사업 72개

구 분	대 상 사 업	
일 반 수 요	재가노인 복지시설 개보수	결연기관 컴퓨터(PC) 구입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차량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역봉사사업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공공보건사업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
	문화의 집 조성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예술창작공간 조성	근대문인탄생 100주년기념
	조각공원 조성	문화인물기념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문화시설 운영평가인센티브	관리책임자대회
	농촌 컴퓨터(PC) 보내기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농기계훈련사업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친환경화장실	원격영농 상담시스템
	양식기반시설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마을어장개발	불가사리 구제
	내수면 환경조사, 어도시설 등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수산물위생안전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계	지역정보화 지원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	임산물유통가공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제 3 장 지방교부세 관련법제의 연혁과 현행제도의 문제점

구 분	대 상 사 업	
특 정 수 요	노인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정신요양시설 운영	장애인 체육관기능 보강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공자기금 이차보전
	환승주차장 건설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담수어 첨단양식장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현충시설	자전거도로 정비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도주최 여성주간사업 지원
	지역별 특성화사업	공주미술제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노량해전 재현
	연어치어 방류	통영 국제음악제
	장보고축제	국제수산 산업전(부산)
수출주력상품 개발		

비경상적 수요는 일반수요와 특정수요로 구분 산정한다. 특정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41개 사업에 대하여 인구, 재정력, 사업추진상황 등을 기준으로 일반수요액을 모든 자치단체에 배분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추진 상황 중앙부처 지원계획의 구체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31개 사업에 대하여 특정 수요액을 배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산정을 합한 자치단체별 수요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자치단체별 분권교부세액을 산정하며, 조정률은 최근 3년 간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지방에 이양한 사회복지사업의 수요는 그동안 연평균 20.5%로 급증하였으나,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8~9% 증가하는데 그쳐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재정곤란이 토로되고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과 같은 광역시설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4. 부동산교부세

(1) 의 의

2005년부터는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전액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5년에 부동산투기 억제 또는 소득재분배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부가 지방세인 재산세(주택, 토지, 건물분)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주택 9억원 초과, 토지 6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 40억원 초과 시 부과)로 이원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종합토지세와 거래세의 인하 등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한 것이다(법 제4조 3항 및 제9조의3).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2) 부동산교부세의 배분방법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세 손실분을 우선 보전하고, 잔여재원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배분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재원의 상당부분(잔여재원)

을 사실상 보통교부세의 산정공식을 이용하여 배분하고 있다.

2008년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최근 급증한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부문의 재정수요를 균형재원 배분기준에 반영하여, 기존의 배분기준인 재정여건(80%), 지방세운영상황(15%), 보유세규모(5%) 등의 기준을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보유세규모(5%) 등으로 개편하였다.

[표] 4대 지방교부세의 비교

구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재원	* (내국세 18.3%-8,500억원) × 96% * 2007규모: 20조 6,921억원 ³⁴⁾	* (내국세 18.3%-8,500억원) × 4% * 2007규모: 8,268억원	* 내국세의 0.94% * 2007규모: 1조 1,387억원	* 종합부동산세 수입액 전액 * 2007규모: 1조 8,892억원
배분	* 재정보전분 -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배분 * 도로보전분 - 지방양여금 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배분	- 지역현안수요 (50%): 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 - 재해대책수요 (50%):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 등 수요	- 경상적 수요: 이양사업 중 일정수준 재원수요 보전 - 비경상적 수요: 이양사업 중 특정한 재정수요 보전	- 재산세, 거래세 등 자치단체 세수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배분
수령단체	* 특별·광역시: 자치구는 본청에 합산산정 * 도, 시, 군	* 전 자치단체	* 전 자치단체	* 전 자치단체

출처: 행정자치부, 『정책백서(2003~2007)』, 2007, 662면.

34)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단체에 교부되는 재정부족액보전분 19조 8,421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의 개편에 따른 기착수한 도로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2008년까지 교부되는 도로보전분 8,500억원으로 구분되어 교부된다.

5. 현행 지방교부세 관련법제의 특징과 개선과제

(1) 지방교부세 관련법제의 특징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를 법제화한 경우는 극소수이며 그 점에서 우리의 지방교부세 관련법제의 입법 및 개정과정은 한국적 지방행정 내지 지방재정제도와 함께 발전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제의 형식과 전개과정에서 보면 일본의 지방교부세법을 답습한 흔적이 많으며, 이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현행법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체계는 교부세 산정 -> 통지 -> 보정 -> 배분 -> 집행 -> 보고(보통교부세의 경우)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부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다음 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 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통교부세 산정의 착오가 있을 경우다음 연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가감토록 한 점, 부당산정(과장 또는 허위기재)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반환이나 감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일본법과 유사한 부분이다.

반면에 교부세의 유형이 비교적 다양하고 독특한 교부세유형을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 법제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두가지 유형만 존재하는 일본의 경우에 비해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추가로 규정해 놓고 있고, 그 형식도 이질적이다. 이를 테면 분권교부세의 경우 2005년에서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전제로 한 것이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재정확충 요구 외에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설계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처럼 유형과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구조가 다소 복잡하게 되었으며, 산정기준과 재원교부방식에서 중첩적인 부분이 노정되고 있기도 하다. 재원마련의 합리성 및 산정의 객관

성, 운영의 투명성이 운영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지방교부세법은 표준적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에 비교적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할 수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원이 많거나 적거나에 관계 없이 표준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재원충족율에 근접하도록 지원된다. 보통교부세의 구체적인 교부액은 자치단체의 규모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율만을 놓고 보면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100%에 미치지 못하는 충족률로 인하여 교부세율의 확대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동안 관련법제의 개정 역시 이런 요구를 수용하거나 관련 자치단체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2)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제도에 관한 평가와 과제

그리 길지 않은 우리 현대 법제사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관련법제는 상당히 일찍 입법화가 이루어졌던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법제정비 작업 역시 매우 빈번히 진행되어 온 분야이기도 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51년 임시지방교부세법으로 출범하여 법령과 제도의 변화를 거쳐 1961년에 현행 지방교부세법 체제로 정착된 이래로도 다시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지방교부세에 관한 개정논의는 현 시점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그 만큼, 지방교부세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고도 다양하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현행 법제가 완결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동안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완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현 시점에서는 법제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크다고 본다.

이 점에서 우선 시도해야 할 작업은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관련법제에 대한 비교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현재 지방교부세를 명시적으로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일반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를 입법화하여 우리 보다 앞서 운영해 오고 있으면서, 우리 지방교부세법의 모델이 되어 온 외국법제는 일본의 지방교부세 관련법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최근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고이즈미정부 하에서 지방교부세제도를 포함한 이른바 3위일체 개혁을 추진한 바가 있기도 해서 분석의 필요성이 가장 큰 법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해서는 본 보고서 내의 별도 연구를 통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한 일본 재정조정제도, 즉 일본의 지방교부세법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 법제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보기로 한다.

제 4 장 일본의 지방교부세 관련법제 분석

I.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교부세

일본의 지방조정제도는 정부단체간 재정력격차 시정과 재원보장을 목적으로 실시된 1936년의 임시 시정촌(市町村) 재정보조금, 1937년의 임시지방재정보조금을 효시로 하고 있다. 이후 1940년의 국가와 지방을 망라한 대세재개편에 의해 지방양여세제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지방조정제도의 구성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지방양여세제도의 3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금제도에 속하며 국고지출금은 특정보조금제도에 해당하고 지방양여세는 양 제도의 중간영역에 속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세는 재원보장기능을 주로 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재원의 형태로 교부되며, 특정사업을 위한 보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국고지출금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는 국가와 지방의 경비부담원칙에 따라 국고부담금, 국고위탁금, 국고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이미 昭和 25년에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과정을 거친 현행 일본 지방교부세법의 구조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일본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교부원칙

1. 일본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의 의의

일본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고 지방재원의 균형을 꾀하여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 중 소득세, 법인세, 주세, 소비세, 담배세의 각

각의 일정비율의 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하여야 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한다.³⁵⁾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그 재산의 관리, 사무의 처리, 및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훼손하지 않고 그 재원의 균형을 꾀하고,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에 의해서 지방자치의 본지의 실현에 이바지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점에서 일본의 지방교부세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고 자치단체간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한다고 하는 지방교부세의 보편적 역할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다만 일본의 경우 교부세의 목적을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재원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참 뜻을 실현하고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서³⁶⁾ 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재정을 재원측면에서 보장하는 점이 부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 지방교부세 제도의 운영원칙

지방교부세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교부세법 제3조는 다음의 3가지 기본 내지 원칙을 제시하다. 첫째, 총무대신은 항상 각 지방단체의 재정상황의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의 총액을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수요액이 재정수입액을 초과한 지방단체에 대하여 형평하게 그 초과액을 보전한 것을 목적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는 교부세의 교부를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본지를 존중하고 조건을 붙이거나 그 용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에 관하여 합리

35) 日本 地方交付税法 第2條 1號.

36) 同法 第1條.

적 또는 타당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법률 또는 정령에서 정한 규모와 내용을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지방교부세의 산정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도부현지사와 시정촌장)은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도도부현의 기준재정 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관한 자료, 특별교부세의 액의 산정에 이용한 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함과 아울러 이러한 자료의 기초가 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단, 시정촌장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가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고 총무대신에 이를 송부한다.

또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안에 포함된 경비에 관하여 지방행정에 관계가 있는 국가행정기관은 총무대신이 요구하는 경우 그 관할에 관계된 행정에 관하여 총무대신의 요구에 관계된 교부세의 총액의 산정 또는 교부에 관하고 필요한 자료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일본 지방교부세는 다섯 가지 국세의 일정부분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 및 주세의 수입액의 각각 100분의 32, 법인세의 수입액의 100분의 34, 소비세의 수입액의 100분의 29.5 및 담배소비세의 수입액의 100분의 25를 교부세의 총액으로 하고 있다.³⁷⁾ 하지만 이 액수를 곧바로 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매년도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총액은 이상의 액의 합산액에 해당 연도 이전에 있어서 교부세로 아직 교부하고 있지 않는 액을 가산하거나 해당 전년도 이전의 연도에 있어 교부해야 한 액을 초과하고 교부한

37) 총액은 1966년도 이후, 소득세, 법인세, 주세의 32%로 하였으나, 세계개혁 및 국고보조부담율의 재조정방침에 따라 1989년부터는 소비세의 24% 및 담배세 25%가 추가되었고, 1997년 이후로는 소비세율의 인상과 함께 소비세 교부세율이 29.5%로 하향조정되었다. 이후 1999년에는 32%에서 32.5%, 2000년도부터는 감수액의 평년도화에 의해 35.8%로 인상되었다가 2007년 부터 34.0%로 인하되었다.

액을 해당 합산액으로부터 감액한 액으로 한다. 각 지방단체에 대한 교부세의 액은 매년도 4월 1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008년도의 일본 교부세 총액은 국세 5세분에 교부세특별회계에서의 잉여금 등 2,502억엔과 전년도 이월분 5,869억엔을 가산한 액에서 교부세특별회계차입금이자지불액 5,711억엔을 공제한 15조4,061억엔이다.

Ⅲ. 일본 지방교부세의 종류

1. 보통교부세의 총액과 산정기준

일본의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된다.³⁸⁾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의 총액은 지방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94를 차지한다. 각 지방단체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액은 해당 지방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한 액³⁹⁾으로 한다. 단, 각 지방단체에 관하여 산정한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의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단체의 재원부족액 - 해당 지방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 {(재원 부족액의 합산액 - 보통교부세의 총액) ÷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한 지방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의 합산액}의 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⁴⁰⁾

총무대신은 보통교부세를 늦어도 매년 8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교부세의 총액의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9월 1일 이후에라도 보통교부세의 액을 결정하거나 이미 결정된 보통교부세의 액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총무대신은 보통교부세의 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38) 日本 地方交付税法 第6條의2.

39) 이를 ‘재원부족액’이라 한다.

40) 同法 第10條.

일부의 지방단체에 관하여 이미 결정된 보통교부세의 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다른 지방단체에 관하여 이미 결정된 보통교부세의 액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해 연도에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총액이 각 지방단체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은 해당 연도의 특별교부세의 총액을 감액하여 충당한다.

2. 특별교부세의 총액 및 산정기준

매년도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특별교부세의 총액은 지방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이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에 현저하게 과대하게 산정된 재정수입이 있는 경우, 교부세의 액의 산정기일 후에 생긴 재해(그 복구에 필요로 한 비용이 국가의 부담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의 확실성으로 인해 생기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과대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과소를 고려하거나 보통교부세의 액이 재정수요에 비하고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단체에 대하여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정을 고려하여 교부한다. 총무대신은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각 지방단체에 교부해야 할 특별교부세의 액을 매년도 2회로 나누고 결정하고, 그 결정은 제1회째는 12월 중에, 제2회째는 3월 중에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회째의 특별교부세의 액의 결정은 그 총액이 해당 연도의 특별교부세의 총액의 3분의 1에 상당한 금액 이내의 금액이 되도록 한다. 아울러 총무대신은 특별교부세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해당 지방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⁴¹⁾

41) 同法 第15條.

3. 지방교부세의 보정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시정(市町村)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측정항목은 경찰비, 소방비, 토목비, 교육비, 후생노동비, 산업경제비, 기타행정비, 공채비 등 7개 38~40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측정단위는 각 측정항목을 대표하는 통계치로 보정계수로 보정된 후 적용된다.

보정방법에는 종별보정(種別補正), 단계보정(段階補正), 밀도보정(密度補正), 태용보정(態用補正) 한냉보정(寒冷補正) 수치급증(數值急増) 급감보정(急減補正), 합병보정(合併補正), 재정력보정(財政力補正) 등 총 9가지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보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먼저 종별보정을 한 후에 다른 방법으로 차적인 보정을 하기도 한다.⁴²⁾

종별보정이란 측정단위를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단위비용의 차이를 반영하는 보정이다 예를 들어 교육비의 측정단위인 고등학교 학생수는 학과 종류별로 소요비용을 세분화하여 적용한다.

단계보정은 측정단위가 클수록 단위비용이 저하된다는 규모의 경제에 입각하여 측정단위의 크기에 단계를 설정하는 보정이다. 주로 표준단체의 측정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측정단위를 감액 혹은 증액하는 방식을 취한다.

밀도보정은 인구밀도 자동차 교통량과 같이 측정단위가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는 보정방식으로 최근에는 교육비 후생노동비 등의 측정항목에 적용하고 있다. 후생노동비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노령자 비율 아동 비율 결핵환자 비율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42) 同法 第13條.

IV. 지방교부세 산정 및 교부에 관한 관련행정기관 장의 의무

태용보정을 통해서도 도시화 진전에 수반된 재정수요 증가분 도서 지역 지자체 통신비 직원 연령구조에 따른 인건비 격차 도로 미정비율 등 투자적 경비필요도의 격차 공공투자사업 지방부담액 격차 등을 측정단위에 반영한다. 한냉보정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기온 적설량 등이 현저한 차이를 보여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정이며 인구 고령자 수 등이 급증 급감 하는 경우 과급력을 완충하고 재정수요를 정확하게 산정할 목적으로는 수치급증 급감보정이 적용된다.

그 밖에 행정 일체화를 요하는 경비 행정수준 주민부담 격차시정을 위한 경비를 반영하는 합병보정 재해복구사업 관련 지방채무 상환비가 재정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하여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재정력보정 등이 있다.

IV. 지방교부세 산정 및 교부에 관한 관련행정기관 장의 의무

1. 제시정촌 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에 관한 도도부현 지사의 의무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시정촌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액의 산정 및 교부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도도부현 지사는 동 사무를 다루기 위해 해당 시정촌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⁴³⁾

도도부현 지사가 시정촌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액을 산정한 경우에 있어 시정촌에 관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에 대하여 그 기초에 이용한 국세의 과세기초가 된 당연 소득액 및 과세액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또는 기록한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43) 同法 第17條.

이 경우 정부는 관계서류를 도도부현지사 또는 그 지정한 직원에게 열람케 하여야 한다.⁴⁴⁾

2. 교부세의 액의 산정에 이용한 자료에 관한 검사

총무대신은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관하여 교부세의 액의 산정에 이용한 자료에 관하여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도부현지사는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내에 있어서 시정촌에 관하여 교부세의 액의 산정에 이용한 자료에 관하고 검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총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V. 착오 및 부당교부된 금액의 환수

1. 착오 및 부당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환수절차

총무대신은 지방교부세법의 관련규정⁴⁵⁾에 의하여 보통교부세의 액을 통지한 후, 또는 심사의 신고를 받을 때에 보통교부세의 액의 산정기초에 이용한 수에 관한 착오가 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 해당 지방단체에 관하여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가하거나 감소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착오를 발견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각각 그 증가 또는 감소해야 할 액을 해당 지방단체에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액의 산정에 사용되는 당연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산하거나 감액한 액으로써 해당 지방단체의 해당 연도에 있어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으로 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의 액의 산정의 기초에 이용한 수에 관하여 착오가 있던 것을 발견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있어서는 총무대신은 총무성

44) 同法 第17條의2.

45) 同法 第10條 第4項.

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액의 산정에 사용되는 당연 해당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한 것 또는 동항의 규정이 적용된 결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한 지방단체에 관하여 교부 연도분으로서 교부를 받았던 보통교부세의 액이 교부를 받는 것이 당연한 보통교부세의 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것을 해당 연도의 교부세로부터 교부하여, 교부연도분으로서 교부를 받았던 보통교부세의 액이 교부를 받는 것이 당연한 보통교부세의 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초과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반환시킬 수 있다. 단 반환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단체가 그 제출에 관계된 교부세의 산정에 이용한 자료에 대해 작위를 가하거나 허위기재를 하여 부당하게 교부세의 교부를 받았던 경우에 있어서는 총무대신은 해당 지방단체가 받는 것이 당연한 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사실을 발견한 때에 곧바로 해당 초과액을 반환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단체는 해당 초과액에 해당 지방단체가 해당 지방교부세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반환의 날까지의 기간의 날수에 따라 년 10.95%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한 가산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해당 지방교부세의 교부를 받았던 후 재해가 있는 등 그 밖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대신은 해당 가산금을 감면하거나 기한을 지정하여 연납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총무대신은 반환조치를 한 경우에 그 이유,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서로써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총무대신이 제시하는 문서의 기재사항을 그 주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반환에 관련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무대신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총무대신

은 전항의 이의의 신청을 받았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청을 받았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해당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 시정촌의 이의신청에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해당 통지는 도도부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⁴⁶⁾

2. 관계행정기관의 권고

관계 행정기관은 그 소관에 관계있는 지방행정에 관하여, 지방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정령에 따라 의무지워진 규모와 내용을 구비할 것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그 지방행정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방단체에 대하여 이를 마땅히 구비하도록 하는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미리 총무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지방단체가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은 총무대신에 대하여 해당 지방단체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총무대신은 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단체의 소명을 청취하여 재해 그 밖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지방단체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하여 감액하거나 반환시키는 교부세의 액은 해당 행정에 대해 법률 또는 이것에 의거한 정령에 따라 의무지워진 규모와 내용을 구비할 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 지방 행정의 수준을 저하시켰기 때문에 필요하게 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⁴⁷⁾

46) 同法 第19條.

47) 同法 第20條의2.

3.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신청

총무대신은 교부세 액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지방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특히 총무대신의 결정 또는 처분 관계 지방단체가 충분한 증거를 들어 형평 또는 공정을 결여하였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공개에 의한 의견의 청취를 행하여야 하며, 의견청취의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⁴⁸⁾

4. 감액 또는 반환된 교부세의 액의 조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한 액은 해당 연도의 특별교부세의 총액에 산입한다. 이미 교부한 교부세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키거나 가산금을 납부시켰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환되거나 납부된 액은 해당 반환되거나 납부된 연도의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에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총액에 산입하여 해당 산입한 연도의 특별교부세의 총액에 산입한다.

VI. 일본 법제의 특징과 평가

일본 지방교부세법은 구조와 내용면에서 우리 지방교부세법과 유사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서 훨씬 규정의 내용이 훨씬 풍부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특히 우리 지방교부세법

48) 同法 第20條.

제의 경우 시행령 등 하위규범에서 정한 내용의 상당수가 법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우리 지방교부세법령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들도 적지 않게 목격된다.

먼저 동법 제20조에서 부당산정 등으로 감액된 경우 감액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해 규정하면서 총무대신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취소 또는 변경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0조의2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권고 규정을 두고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권고를 한 후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총무대신에 통지하여 총무대신은 사전에 교부세의 일부 또는 전부 감액이나 사후에 일부 또는 전부 반환토록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과장이나 허위기재로 인한 부당산정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가산금을 국가에 납부토록 하는 한편 가산율을 10.95%로 구체화한 점도 특이하다.

요컨대, 지방교부세의 산정과 교부, 사후검사 등 절차적 공정성에 충실하다는 점과 지방교부세의 운영주체 및 교부대상 기타 관련기관의 의무와 역할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법체계의 완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 5 장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지방교부세의 제도적 성과

우리나라에 지방교부세 관련법제가 도입된 1951년 이래로 지방재정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수행한 역할은 부족한 지방재원의 확충, 재정불균형 시정 등 여러 면에서 지대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순기능에 힘입어 일각에서의 세원재배분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거듭하여 왔다.

특히, 지방재원의 확충, 재정불균형의 시정, 지역균형발전 등이 정책 목표로 설정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신설,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분권교부세제도의 신설, 지방세제의 개편, 부동산교부세제도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지방교부세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의 자주재원 증대 및 재정 자율성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지방교부세율의 확대와 중앙사무의 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제도 도입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등은 부분적으로 포괄보조금 형식의 운영 등으로 재원확충과 동시에 재정자율성을 증대시켰다. 특히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그동안 국고보조금의 과다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저해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을 위한 효과적인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지방양여금을 폐지하여 그 재원의 일부를 보통교부세 및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지방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를 하였다.

지방교부세를 통해 국가의 지방에 대한 재원이전에 있어서 일반재원의 비중이 제고된 점도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주어질 수 있다. 지방재정의 확충이 지방세의 증대보다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립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교부세를 통한 이전재정이 국고보조금을 통한 이전재정보다 많다는 점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있고 그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거나 선호하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5년 이후로는 기존 국고보조금제도를 개편하여 분권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포괄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분권교부세의 경상수요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율편성사업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교부세를 도입하여 부동산세제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보전해주고 잔여재원을 기초단체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형평화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 간의 지방교부세 관련법제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동시에 지방교부세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과 입법적 미비로 인해 지방교부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국회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줄곧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 문제제기는 주로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그 근저에는 법제적 원인도 적지 않게 자리잡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지방교부세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을 법제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

1. 현행 지방교부세 유형의 적정성

네 가지 유형의 지방교부세를 설정하고 있는 현행 방식이 적절한지의 문제가 있다.

우선 교부세의 종류 가운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별도의 유형으로 존립되어야 할 근거가 명확치 않고 제도간의 연계도 잘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부동산교부세의 균형재원을 배분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재정여건은 이미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재정력지수 등으로 중복되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 산정을 위해 사회복지수요를 추가한 것은 분권교부세의 산정수요와 중복된다.

개별 교부세들이 재정형평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재정형평화를 제고시킬 수도 있으나,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분권교부세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서 별도의 법제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단순화하여 통합운영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한계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부침을 거듭하며 변화해 왔으나, 전반적인 기조는 상향으로의 조정이었다. 특히 2005년에 내국세수입의 15%이던 법정교부율을 19.13%로 높였고, 2006년 이래로 다시 19.24%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양여금에 의해 양여되던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흡수시킨 것인데다 일부는 분권교부세의 재원이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정지원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보통교부세를 통한 재정부족액 충족율은 2005년 86.2%, 2006년 86.5%, 2007년 88.4%, 2008년에 89.2%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율만을 가지고는 여전히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세수입으로 인

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점하는 현실에서 현행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 및 현재의 18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거의가 법정교부율의 상향조정에 관한 것이었다.

[표] 지방교부세 관련법제 개선을 위한 최근 의원발의 현황

대표 발의의원	제안 일시	주요 내용
윤건영	2005. 5. 25	o 부동산 교부세의 용도 제한에 대한 금지 조항 삽입
문희	2007. 3. 20	o 교부세율 상향 조정 : 19.24% ->20.24% o 분권교부세율 상향 조정 : 0.94% ->1.94%
정갑윤	2006. 11. 22	o 교부세율 19.24%-> 21.24%
유재건	2006. 8. 18	o 분권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총액의 0.94% -> 1.24%로 상향 o 증가된 내국세총액의 0.3%에 해당하는 액을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발전을 저해받는 자치단체에 교부함
엄호성	2006. 8. 8	o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 지원 근거 마련
이영순	2006. 5. 8	o 분권교부세율을 0.94% -> 0.42%로 하향 조정 o 특별교부세 중 재해대책비를 제외하고는 보통교부세로 산입 (100분의 4 ->100분의 2) o 부동산교부세의 이원화 : - 개인 납부 : 부동산교부세 재원 - 법인 납부 : 보통교부세 재원
안상수	2005. 12. 7	o 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컨테이너수송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년 50억원 이상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대표 발의의원	제안 일시	주요 내용
최규식	2004. 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하여도 별도의 보통교부세를 산정·교부함 ○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고,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현안수요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다음 연도 6월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고에 반환함 ○ 국고에 반환된 특별교부세의 경우 국가의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하지 않고, 다음연도 특별교부세의 재원에 더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함 ○ 재원산정 및 교부기준에 관한 특례로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출처: 이원희,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의 평가와 향후과제, 지방교부세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 2007.7.

3. 교부세의 부당운영 유인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최근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제도 자체가 가진 도덕적 해이나 부당산정 등의 폐단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운영상의 재량권이 고도로 보장되어 있는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세수입 보다도 선호도가 높은 재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점에서 가급적 많은 교부세를 확보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런 유인은 그동안 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의 과다산정과 그에 이은 부당지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에만 의존하지 않고 세입의 증대와 세출절감을 통해 만성적 재정부족상태를 개선하고 자립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강구토록

제도적인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

4. 세수절감과 지방교부세제도의 연계(인센티브제도)

지난 1997년부터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절감단체, 지방세징수 노력단체, 일용인부 사용이 적은 단체, 지방세 징수율이 높은 단체, 공무원 표준정원 기준유지 단체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불량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벌칙을 동시에 부여하였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근절, 재난관리, 물가관리에 있어 우수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2001년부터는 특별교부세의 인센티브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보통교부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2년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지방세 체납 축소와 지방세 세원발굴, 2004년도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각각 추가되었다. 2007년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지방공무원 정원감축과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 기준재정수입액에서는 과표현실화가 제외되었다. 2008년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 사회문화·복지 분야 예산운영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인센티브지표의 변천은 지방재정운용 방향과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지방세수에 대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지방세 체납을 축소와 지방세원 발굴을 추가하였고, 2004년부터는 지방상수도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를 반영하였다. 2007년부터는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감축과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을 제외하고 2005년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에 과표 현실화를 배제하였다. 2008년에는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문화·복지분야 예산운용을 반영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인센티브지표가 수시로 변화하여 예측가능성이 저

하되고 있는데다, 인센티브로 인해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센티브 산정방식을 단년도 실적에서 3년 평균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대두되고 있다.

5. 특별교부세 제도의 불투명성 문제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는 투명한 운영에 대한 요구가 줄곧 제기되고 있다. 특별교부세의 지원현황에 대한 비공개, 배분방식의 불투명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그간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재원규모를 지방교부세의 9.09%에서 4%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수요항목 역시 시책사업, 지역현안, 재해대책, 지역개발, 특정현안 등 5개 사업에서 지역현안과 재해대책 등 2개 사업으로 조정한 바가 있다. 아울러 재해대책사업의 사용 잔액에 대해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우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보통교부세에 비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후 국회 등을 통한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6. 분권교부세 소요액의 과대산정 문제

분권교부세 역시 지난 2005년 제도 도입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도입단계부터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생략되었고, 추가적인 재원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신규사업의 미반영으로 인한 재원규모의 부족과 주로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갈등 노정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표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소요액의 부당한 산정사태가 다수 적발되었다. 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시설 운영사업 등에 대한 자치단체별 분권교부세 소요액을 조사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노인

시설 입소인원수를 부풀려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정 자치단체의 시설 입소 인원수는 오히려 복지부에서 과대산정하기도 했다. 그 결과 총 2000여명의 인원이 부풀려져 배분되어서는 아니 되는 분권교부세 84억여원이 과다하게 지급됐다. 전북 고창군의 경우는 사업수요가 없는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사업의 수요를 허위로 기재하여 분권교부세 2억원을 교부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전북 임실군을 현충시설 분권교부세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1억4000만원을 교부했는데, 동 사업은 임실군이 사업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이미 취소한 사업이었다. 그 결과 임실군은 교부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

교부세의 부당 집행관행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부산광역시의 경우 수익성이 없는 지급버스 적자노선에 대해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재정지원보조금을 버스운수사업자들에게 모두 3,666억원을 지급했으나, 이 가운데는 부산시가 원가계산을 잘못해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노선에 보조금 25억원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충북 청주시도 지원대상이 아닌 버스노선에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과다하게 교부했다.

구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다른 장애인 생활시설과 달리 특정 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경북 안동시의 경우 전국 평균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비가 1인당 월 100여만원, 안동시 다른 장애인 시설이 134만원 수준인데 비해, 일부 시설에는 217만원 까지 지원을 하였고 원주시의 경우는 무료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를 선정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자를 수급자인 것처럼 꾸며 입소케 했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사후관리 또한 적절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정수요 사업에 교부된 분권교부세를 받은 자치단체에서 이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였다면, 이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도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분권교부세를 2010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복지관련 사업은 과거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분권교부세로 소요경비를 보전하고 있으나 교부재원 부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애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이양 대상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사회복지 투자를 전담하는 별도의 이전재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7. 부동산교부세의 불균형성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본래 그 성격과 재원이 매우 상이하다.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면서 기존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흡수되면서 축소되는 세원 및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의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세수감소분을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재원으로 배분되는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부세 제도를 별개의 정책 목표와 연계시키는 것은 제도자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교부세 제도 전반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원의 일부를 징수대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현행방식의 타당성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8. 입법기술적 측면의 문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는 개별 법률에서 다분히 기술적(技術的)인 규정들을 가

지고 규율해 오고 있다. 지방교부세가 지방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재원의 규모에 비추어 20개가 채 되지 않는 간소하고 최소한도의 규정만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나마 현행법상 규정의 상당수는 네 유형의 지방교부세에 관해 교부방식을 규율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법제적 측면에서 법률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교부세의 유형별 교부방식과 원칙을 규율하고 중간에 착오나 부당산정 등에 관한 조치 등이 일관성 없이 기술되어 있다.

이 같은 입법적 미비는 우리 법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 지방교부세법과 비교하더라도 명확히 드러난다. 지방교부세를 둘러싼 그간의 정책적 논쟁과 주장은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입법자의 판단과 결정사항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법제적 보완은 다분히 후속적 내지 보충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입법기술적 내지 법률체계상의 보완은 정책적 판단의 여지가 적은 사안이면서 시급한 현안이라고 사료된다. 이하에서는 법제정비방안을 상기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과 입법기술 및 법 체계정비 차원에서 요구되는 모색방안의 두 가지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Ⅲ. 지방교부세제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1. 정책적 측면에서의 법제개선 방향

(1) 지방교부세 제도의 통합방안

4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지방교부세제도는 부분적으로 유사성과 중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등을 장기적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이원체제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한이 곧 도래하는 분권교부세는 복지수요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으로 환원하

고, 그 외의 수요는 보통교부세의 수요항목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로도 재정수요가 있을 때마다 법개정을 통해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련법제 개선에 앞서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 재배분 및 기존의 재정조정제도와와의 정합성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재정증액 방안

지방교부세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정교부율의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개편이 근본적이면서도 완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방행정의 필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의 부족액을 지방교부세를 통해서만 충족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와 현재 90%에 육박하고 있는 충족율이 시급한 법제개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제고되어야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지에는 의문이 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먼저 전제로써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국세의 지방으로의 이양방안에 따라 그 적정비율을 재산정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자치구조정교부금을 폐지하거나 보통교부세로 흡수하는 등의 대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정교부율과 관련된 법제 개선의 방향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성질로서 이에 관한 중국적 평가는 유보한다.

다만, 보통교부세의 재정부족액 충족도가 낮다는 점을 상기하면 최근 1조원 이상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특별교부세의 일부를 보통교부세로 전환시켜 사용함으로써 지방교부세의 재정보전기능과 재정형평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3) 지방교부세의 투명성 및 형평성 제고

지방교부세 재원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제도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교부세의 배분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특히 보통교부세의 산정공식이나 방법을 자주 개편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인센티브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특별교부세의 배분 내역과 개별 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의 배분규모와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제7조는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액 등을 특별시·광역시에 통합하여 산정토록 하는데, 자치구의 경우도 타 기초단체와 동일하게 지방교부세 대상단체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예기치 못한 재해나 불가피한 지방재정수요의 발생 등에 대비하여 일정 부분을 교부대상으로 존치시킬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엄격한 배분기준과 함께 사후적으로도 자치단체별 배정내역과 사유를 전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배분내역·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 세부배부내용을 조정하고 집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치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를 개정하거나 제15조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특별교부세와 관련하여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의 잔여 재원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세 인센티브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하위규범으로 위임된 사항을 법률사항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원의 일부를 징수대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현행방식의 타당성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해당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징수액 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 교부세 산정의 정확성 제고방안

1) 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한 감사의무 부과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세 산정자료의 착오를 인지 내지 발견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미비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교부세의 산정에 이용한 자료에 관한 검사를 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⁴⁹⁾

이를 위하여 제8조의2를 신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의 액의 산정에 이용한 자료에 관하여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하고, 현재의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9) 일본 지방교부세법 제17조의3 참조.

2) 교부세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의 도입

법 제6조 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자치단체별 내역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각 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부당산정 등으로 감액된 경우 감액에 대한 의견청취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가령 감액이나 반환의 명령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세의 감액이나 반환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다.⁵⁰⁾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결과에 대한 통지를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이 같은 규정은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규정한 법 제13조의 다음 조문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조문의 성격이 유사한 만큼, 제14조 보다는 제13조의2의 형식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나 국가의 일방적 통지와 처분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교부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권리와 함께 의견개선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방교부세를 적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를 확인해 주는 법제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3) 감액 내지 반환되는 금액의 한도

한편 법리적 측면에서 부당산정에 대하여 행정제재별적 성격을 가미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테면 감액 또는 반환 결정이

50) 일본 지방교부세법 제20조 참조.

내려지더라도 반환 내지 감액되는 금액의 한도는 부당산정으로 인해 정당하게 교부받아야 할 금액에서 초과되는 정도가 될 것이고 그 이상의 금액을 감액하거나 반환토록 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비록 해석을 통해서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으나 규정을 통해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부당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방안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왜곡 또는 과장, 허위기재 등을 통해 교부세를 부당산정하더라도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반환이나 감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설령 적발이 되더라도 해당 부분을 사전에 감액 내지 사후에 반환하면 되므로, 사실상 손실이 없게 된다. 이런 수위의 제재조치로는 재발방지나 사전억제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1) 가산금의 부과

교부세액을 부당산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제재별적 성격을 가미하기 곤란하다면 보다 현실적으로 부당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적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과장이나 허위기재로 인한 부당산정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지방교부세의 엄정운영 방침에 대한 입법자의 태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가산금의 한도는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정율을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무방할 것이다.⁵¹⁾

51) 참고로 일본 지방교부세법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부당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는 10.95%의 가산금을 국가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2) 지방교부세 운영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활용

한편 지방교부세의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교부세 산정 및 집행의 적정성에 관해 정확한 정보와 판단능력을 보유한 관계행정기관의 역할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관계 행정기관은 소관업무에 관계있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해당 지방단체가 지방자체세의 운영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방행정의 수준을 저하시키거나 지방교부세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지방단체에 대하여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계행정기관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해당 지방단체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지방단체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반론을 청취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교부세 배분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장치로서 급격한 표준행정수요액의 금액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액변동의 상하한선을 두는 등의 조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부당 집행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입법기술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 지방교부세법의 체계 재정비

현행법만으로는 지방교부세에 관한 강학상, 내지 실무상 인정되어 온 일반재원(unconditional lump-sum grants)으로서의 성격조차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지방교부세의 현실은 물론 운영상의 원칙과 더불어 집행과정상의 오류에 대한 시정 및 제재수단과 같은 절차적 규정까지 총체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지방교부세 산정과정에서의 착오나 부당성에 대한 시정, 보고 등의 규정도 교부세의 유형에 따라 일관되어 있지 않고 부분적인 규율로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교부세산정과정의 착오나, 국회보고 의무규정은 보통교부세에 국한하여 규정되고 있다. 법 제6조 제2항이나 제8조의2가 그러하다.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일원화하고 전체 교부세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지방교부세 제도에 관한 기본법성격을 강화하면서도 절차법적 요소를 보완하여 법체계상의 완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운영원칙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지방교부세 운영상의 원칙 명시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 등의 논란은 많은 부분 법제 이외에 운영상의 과오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관련한 국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등 제 주체의 의무 내지 지방교부세 운영의 원칙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현행법령만으로는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의 일반재원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운영에 있어서 제도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방교부세에 조건을 붙이

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산정 및 배분주체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형평에 맞추어 교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편 지방교부세의 집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지방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집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세 액의 산정 및 집행에 관한 의무규정으로서 가령 “재정상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성조,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개선방향”, 지방재정 제146호, 2007.6, pp.65-78
- 강주영, “참여정부에서의 지방재정지원 법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방교부세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4호(통권 제16호), 2007.12, pp.143-158.
- 기획예산처, 『2006~2010 국가재정운영계획: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분야』, 2006.
- 김정훈, 『지방교부세의 형평화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12.
- 김태석·김영숙, 『지방교부세 운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감사원 평가연구원, 2006.12
- 이성근, 『지방교부세의 지역간 소득재분배효과와 경제후생에 관한 연구』, 아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용환·박충훈, 『재정조정제도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5.11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교부세백서』(2005년, 2006년도), 2007.7.
-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06
- 關野滿夫, 『地方財政論』, 靑林書店, 2006.
- 日本租稅理論學會 編, 『地方自治と稅財政制度』, 法律文化社, 2006.
- 林 宏昭·橋本恭之, 『地方財政(第2版)』, 中央經濟社, 2002.
- 內山 昭, 『現代の財政』, 稅務經理協會, 2006.
- 日本財政法學會, 『地方財政の變貌と法』, 經草書房, 2005.

참 고 문 헌

- Bahl, R.(1999), “Implementation Rule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Working Paper 99~1. Georgia State University, Andrew Young School of Policy Studies.
- Berne, R. & Schramm, R.(1986), The Financial Analysis of Governmen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Bird. R. M & M. Smart,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International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30(6), 2002.
- Brodway, R. W., and Paul A. R. Hobson.(1993),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Canada, Canadian Tax Paper 96.
- Council of Europe.(1999), “Limitations of Local Taxation. Financial Equalisation and Methods for Calculating General Grants”,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in Europe No. 65.
- GAO.(2003), District of Columbia: Structural Imbalance and Management Issues.
- Groves, S. M. and Valente, M. G.(1994), Evaluating Financial Condition, ICMA.
- Musgrave, R. A.(1989),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2005),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Report(England) 2004/2005.
- Foley, D. K.(1967), “Resource allocation and public sector”, Yale Economic Essay 7.
- Shah. A.(2004), Lessons from International Practices of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부 록

[부 록]

일본 地方交付税法

(昭和 25년 5월 30일 법률 제211호)

최종 개정 : 平成 20년 4월 30일 법률 제22호

(이 법률의 목적)

제 1 조 이 법률은 지방단체가 자주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한 권능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 재원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방교부세의 교부의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지방 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지의 실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지방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의의)

제 2 조 이 법률에 있어 다음 각호에 언급한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지방교부세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세, 법인세, 주세, 소비세 및 담배소비세의 각각의 일정비율의 액으로 지방단체가 본연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 2 지방단체란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정촌(市町村)을 말한다.
- 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지방단체의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단체에 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액을 말한다.

[부 록]

- 4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지방단체의 재정력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단체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액을 말한다.
- 5 측정단위란 지방 행정의 종류마다 설치되거나 이 종류마다 그 양을 측정한 단위로, 매년도의 보통 교부세를 교부 지나기 위하여 이용한 것을 말한다.
- 6 단위비용이란 도부현 또는 시정촌마다, 표준적 조건을 구비한 지방단체가 합리적, 또한, 타당한 수준에 있어 지방 행정을 행한 경우 또는 표준적인 시설을 유지한 경우에 필요로 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 및 지방세의 수입중 기준재정수입액에 상당한 것 이외의 것을 재원으로 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각 측정 단위의 단위 정답의 비용(해당 측정 단위의 수치에 대해 제1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에 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 후의 측정 단위의 단위 정답의 비용)으로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이용한 지방 행정의 종류마다의 경비의 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측정 단위의 수치를 곱한 것을 말한다.

(운영의 기본)

- 제 3 조 총무대신은 항상 각 지방단체의 재정상황의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고 한다)의 총액을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수요액이 재정수입액을 초과한 지방단체에 대하여 형평하게 그 초과액을 보전한 것을 목적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교부세의 교부를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존중하고 조건을 붙이거나 그 용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지방단체는 그 행정에 관하여 합리적 또는 타당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적어도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정령에 따라 의무지워진 규모와 내용을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총무대신의 권한과 책임)

제 4 조 총무대신은 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에 언급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1 매년도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총액을 견적하는 것.
- 2 각 지방단체에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액을 결정하고 이를 교부하는 것.
- 3 제10조, 제15조, 제19조 또는 제20조의2에 규정한 경우에 있어 각 지방단체에 대한 교부세의 액을 변경하고 감액하거나 반환시키는 것.
- 4 제18조에 정한 지방단체의 심사의 신고를 수리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 5 제19조 제7항(제20조의2 제4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이의의 신청을 수리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 6 제20조에 정한 의견의 청취를 하는 것.
- 7 교부세의 총액의 견적 유리 및 각 지방단체에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액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비하는 것.
- 8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고 항상 지방재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교부세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개선을 도모하는 것.
- 9 전 각호에 정한 것 외에 이 법률에 정한 사항

(교부세의 산정에 관한 자료)

제 5 조 도도부현지사는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도도부현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관한 자료, 특별교부세

[부 록]

의 액의 산정에 이용한 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함과 아울러 이러한 자료의 기초가 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2 시정촌장은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정촌의 기준 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 수입액에 관한 자료, 특별교부세의 액의 산정에 이용한 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함과 아울러 이러한 자료의 기초가 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3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고 총무대신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 기준재정수요액의 안에 포함된 경비에 관하여 지방행정에 관계가 있는 국가행정기관(내각부, 궁내청 및 내각부 설치법(平成 11년 법률 제89호)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관 및 국가행정조직법(昭和 23년 법률 제120호) 제3조 제2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고 한다)은 총무대신이 요구한 경우에는 그 관할에 관계된 행정에 관하여 총무대신의 요구에 관계된 교부세의 총액의 산정 또는 교부에 관하고 필요한 자료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세의 총액)

제 6 조 소득세 및 주세의 수입액의 각각 100분의 32, 법인세의 수입액의 100분의 34, 소비세의 수입액의 100분의 29.5 및 담배소비세의 수입액의 100분의 25로써 교부세로 한다.

2 매년도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총액은 해당 연도에 있어서 소득세 및 주세의 수입전망액의 각각 100분의 32, 법인세의 수입전망액의 100분의 34, 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29.5 및 담배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한 액

의 합산액에 해당 연도의 전년도 이전의 연도에 있어서 교부세로 아직 교부하고 있지 않는 액을 가산하거나 해당 전년도 이전의 연도에 있어 교부해야 한 액을 초과하고 교부한 액을 해당 합산액으로부터 감액한 액으로 한다.

(교부세의 종류 등)

제 6 조의 2 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한다.

2 매년도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총액은 전조 제2항의 액의 100분의 94 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3 매년도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특별교부세의 총액은 전조 제2항의 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특별교부세의 액의 변경 등)

제 6 조의 3 매년도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총액이 제 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각 지방단체에 관하여 산정한 액의 합산액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초과액은 해당 연도의 특별교부세의 총액에 가산한다.

2 매년도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총액이 계속해서 제 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각 지방단체에 관하여 산정한 액의 합산액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지방재정 또는 지방행정에 관계된 제도의 개정 또는 제6조 제1항에 정한 비율의 변경을 행한다.

(세입 세출 총액의 전망액의 제출 및 공표의 의무)

제 7 조 내각은 매년도 좌에 언급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년도의 지방단체의 세입 세출 총액의 전망액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일반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 록]

- 1 지방단체의 세입총액의 전망액 및 좌의 각호에 언급한 그 내역
가. 각 세목마다의 과세표준액, 과세율, 조정전망액 및 징수전망액
나. 사용료 및 수수료
다. 채권발행액
라. 국고지출금
마. 잡수입
- 2 지방단체의 세출 총액의 전망액 및 왼쪽의 각호에 언급한 그 내역
가. 세출의 종류마다의 총액 및 전년도에 대한 증감액
나. 국고지출금에 의거한 경비의 총액
다. 지방채의 이자 및 자본금상환금

(교부세의 액의 산정기일)

제 8 조 각 지방단체에 대한 교부세의 액은 매년도 4월 1일 현재에 의하여 산정한다.

(폐치분합 또는 경계 변경의 경우의 교부세의 조치)

제 9 조 전조의 기일 후에 있어 지방단체의 폐치분합(廢置分合) 또는 경계변경이 있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방단체에 대한 교부세의 조치에 관해서는 좌의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한 지방단체의 구역이 그대로 다른 지방단체의 구역으로 되는 때에는 해당 폐치분합의 기일 후에 해당 폐치분합전의 지방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교부세의 액은 해당 지방단체의 구역이 새롭게 속하는 지방단체에 교부한다.
- 2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한 지방단체의 구역이 분할되는 때 또는 경계 변경이 있을 때에 해당 폐치분합 또는 경계 변경의 기일

후에 해당 폐치분합 또는 경계 변경전의 지방단체에 대하여 교부해야 하는 교부세의 액은,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폐치분합 또는 경계 변경에 관계된 구역이나 경계 변경에 관계된 구역을 제외하고 해당 지방단체의 구역을 기초로 하는 독립의 지방단체가 각각 해당 연도의 4월 1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에 있어 이러한 지방단체에 대하여 교부해야 한 교부세의 액으로 나누어, 그 나누었던 액을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에 관계된 구역이 속한 것이 된 지방단체 또는 경계 변경에 관계된 구역이 속하고 있던 지방단체에 대하여 각각 교부한다.

(보통교부세의 액의 산정)

제10조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한 지방단체에 대하여 차항에 정한 바에 따라 교부한다.

2 각 지방단체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액은 해당 지방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한 액(이하 본항 중 「재원부족액」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단, 각 지방단체에 관하여 산정한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의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 액으로 한다.

해당 지방단체의 재원부족액 - 해당 지방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 {(재원 부족액의 합산 액 - 보통교부세의 총액) ÷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한 지방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의 합산 액}

3 총무대신은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액을 늦어도 매년 8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단 교부세의 총액의 증가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

[부 록]

이후에 보통교부세의 액을 결정하거나 이미 결정된 보통교부세의 액을 변경할 수 있다.

- 4 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5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일부의 지방단체에 관하여 이미 결정된 보통교부세의 액을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로 인해 다른 지방단체에 관하여 이미 결정된 보통교부세의 액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6 해당 연도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총액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각 지방단체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부족액은 해당 연도의 특별교부세의 총액을 감액하여 이로써 충당한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

제11조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단위의 수치를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고 이것을 해당 측정단위 등의 단위비용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해당 지방단체에 대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측정 단위 및 단위 비용)

제12조 지방행정에 필요로 한 경비 중 각 지방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경비의 종류를 구분해 그 액을 산정한 것(다음 항에 있어 「개별산정경비」라고 한다)의 측정 단위는 지방단체의 종류마다 다음 표의 경비의 종류의 란에 언급한 경비에 관하여 각각 그 측정 단위의 란에서 정한다.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 정 단 위
도부현 (道府県)	1 경찰비	경찰직원 수
	2 토목 비	
	1 도로교 이용비	도로의 면적
		도로의 연장
	2 하천비	하천의 연장
	3 항만비	항만에 있어서 계류시설의 연장
		항만에 있어서 외곽시설의 연장
		어항에 있어서 계류시설의 연장
		어항에 있어서 외곽시설의 연장
	4 그 밖의 토목비	인구
	3 교육비	
	1 초등학교비	교직원수
	2 중학교비	교직원수
	3 고등학교비	교직원수
		학생수
	4 특별지원학교비	교직원수
		학급수
	5 그 밖의 교육비	인구
		고등전문학교 및 대학의 학생의 수
		사립의 학교의 유아, 아동 및 학생의 수
	4 후생노동비	
	1 생활보호비	읍촌부 인구
	2 사회복지비	인구
	3 위생비	인구
	4 고령자보건복지비	65세 이상 인구
		75세 이상 인구
5 노동비	인구	

[부 록]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 정 단 위
	5 산업경정비	
	1 농업행정비	농가수
	2 임야행정비	공유이외의 임야의 면적
		공유임야의 면적
	3 수산행정비	수산업자수
	4 상공행정비	인구
	6 총무비	
	1 징세비	세대수
	2 연금비	연금수급권자 수
	3 지역진흥비	인구
	7 재해복구비	재해복구 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에 관계된 원리 상환금(상환 기한의 만료의 날에 있어 자본금의 전부를 상환한 것으로서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에 있어서는, 그 상환이 자본금 균등 반년부 상환의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원리 상환금에 상당한 액. 이하 동일)
	8 보정예산채상환비	昭和 52년도로부터 平成 10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국가의 보정예산 등에 관계된 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이 허가된 지방채에 관한 원리상환금
		平成 11년도로부터 平成 14년도까지 및 平成 16년도로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국가의 보정예산 등에 관계된 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
	9 지방세 수입 감소 보전채상환비	지방세의 수입 감소 보전을 위해 昭和 62년부터 平成 19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 정 단 위
	10 지역재정 특례 대책채 상환비	지역 재정 특례 대책을 위해 昭和 62년부터 平成 5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을 허가된 지방채의 액
	11 임시재정 특례채 상환비	임시 재정 특례 대책을 위해 昭和 62년부터 平成 12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히 발행이 허가된 지방채의 액
	12 재원대책채 상환비	平成 6년부터 平成 19년까지의 각 연도의 재원 대책을 위해 해당 각 연도에 있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
	13 감세보전채 상환비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에 관계된 특별 감세 등에 의한 平成 6년부터 平成 8년까지 및 平成 10년부터 平成 18년까지의 각 연도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일으키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14 임시세수보전채 상환비	임시세수보전을 위해 平成 9년에 있어 특별히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15 임시재정대책채 상환비	임시재정대책을 위해 平成 13년부터 平成 19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히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시정촌 (市町村)	1 소방비	인구
	2 토목비	
	1 도로교 이용비	도로의 면적
		도로의 연장
	2 항만비	항만에 있어서 계류시설의 연장
		항만에 있어서 외곽시설의 연장
		어항에 있어서 계류시설의 연장
		어항에 있어서 외곽시설의 연장
3 도시계획비	도시계획구역에 있어서 인구	
4 공원비	인구	
	도시공원의 면적	

[부 록]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 정 단 위
	5 하수도비	인구
	6 그 밖의 토목비	인구
	3 교육비	
	1 초등학교비	아동수
		학급수
		학교수
	2 중학교비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3 고등학교비	교직원수
		학생수
	4 그 밖의 교육비	인구
		유치원의 유아 수
	4 후생 비	
	1 생활보호비	시의 부분 인구
	2 사회복지비	인구
	3 보건위생비	인구
	4 고령자 보건 복지비	65세 이상 인구
		75세 이상 인구
	5 청소비	인구
	5 산업경제 비	
	1 농업행정비	농가수
	2 임야수산행정비	임업 및 수산업의 종업원 수
	3 상공행정비	인구
	6 총무비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 정 단 위
	1 징세비	세대수
	2 가적주민기 본대장비	가적수
		세대수
	3 지역진흥비	인구
		면적
	7 재해복구비	재해복구 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에 관계된 원리 상환금
	8 벽지대책사업 채 상환비	벽지대책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에 관계된 원리상환금
	9 보정예산채 상환비	昭和 52년도부터 平成 10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국가의 보정예산 등에 관계된 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을 허가된 지방채에 관계된 원리 상환금
		平成 11년부터 平成 14년까지 및 平成 16년도로부터 平成 19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국가의 보정예산 등에 관계된 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
	10 지방세 수입 감소 보전 채 상환비	지방세의 수입 감소 보전을 위해 昭和 62년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
	11 지역재정 특 례 대책채 상환비	지역 재정 특례 대책을 위해 昭和 62년부터 平成 5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이 허가된 지방채의 액
	12 임시재정 특 례채 상환비	임시 재정 특례 대책을 위해 昭和 63년부터 平成 12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이 허가된 지방채의 액
	13 재원대책채 상환비	平成 6년도로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의 재원 대책을 위해 해당 각 연도에 있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

[부 록]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 정 단 위
	14 감세보전채 상환비	개인의 시정촌 민세에 관계된 특별 감세 등에 의한 平成 6년도로부터 平成 8년도까지 및 平成 10년도로부터 平成 18년도까지의 각 연도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각 연도에 있어 특별히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15 임시세수보전채 상환비	임시세수보전을 위해 平成 9년도에 있어 특별히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16 임시재정대책채 상환비	임시재정대책을 위해 平成 13년도로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히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 2 지방 행정에 필요로 한 경비중 개별 산정 경비 이외의 것의 측정 단위는 도부현 또는 시정촌별 인구 및 면적으로 한다.
- 3 전2항의 측정 단위의 수치는 다음 표의 상란에 언급한 측정 단위에 관하여, 각각 중란에 정한 산정의 기초에 따라 하란에 언급한 표시 단위에 근거하여 총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측정 단위의 종류	측정 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 단위
1 인구	관보로 공시된 최근의 국세 조사의 결과에 의한 해당 지방단체의 인구	인
2 면적	국토 지리원에 있어 공표한 최근의 해당 지방단체의 면적	평방 킬로미터
3 경찰직원수	경찰법(昭和 29년 법률 제162호) 제57조에 규정한 정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도부현의 경찰직원 수	인
4 도로의 면적	도로법(昭和 27년 법률 제180호) 제28조에 규정한 도로 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고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해당 지방단체가 관리한 것이지만 면적	1000 평방미터

측정 단위의 종류	측정 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 단위
5 도로의 연장	도로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해당 지방단체가 관리한 것이지만 연장	킬로미터
6 하천의 연장	하천법(昭和 39년 법률 제167호) 제12조 제2항에 규정한 하천 현황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하천에서 해당 지방단체가 그 경비를 부담한 것이지만 하천 중, 해당 지방단체의 구역내에 소재 하는 것이지만 연장	킬로미터
7 항만에 있어서 계류 시설의 연장	항만법(昭和 25년 법률 제218호) 제49조의2 제1항의 항만 대장(이하 『항만대장』이라고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계류 시설의 연장에 해당 지방단체가 경비를 부담한 항만에 관계된 것	미터
8 항만에 있어서 외곽 시설의 연장	항만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외곽 시설(항만법 제2조 제5항 제9호의 2에 언급한 폐기물처리 시설중 폐기물 매립 호안을 포함 한다)의 연장에 해당 지방단체가 경비를 부담한 항만에 관계된 것	미터
9 어항에 있어서 계류 시설의 연장	어항어장정비법(昭和 25년 법률 제137호) 제36조의2 제1항의 어항 대장(이하 『어항대장』이라고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계류 시설의 연장에 해당 지방단체가 경비를 부담한 어항에 관계된 것	미터
10 어항에 있어서 외곽 시설의 연장	어항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외곽 시설의 연장에 해당 지방단체가 경비를 부담한 어항에 관계된 것	미터
11 도시계획구역에 있어서 인구	최근의 국세 조사의 결과에 의한 해당 지방단체의 인구에서 도시계획법(昭和 43년 법률 제100호) 제4조 제2항의 도시계획구역에 관계된 것	인
12 도시공원의 면적	도시공원법(昭和 31년 법률 제79호)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도시공원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도시공원에서 해당 시정촌이 관리한 것이지만 면적	1000 평방미터

[부 록]

측정 단위의 종류	측정 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 단위
13 초등학교의 교직원수	공립 의무교육제 학교의 학급 편제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昭和 33년 법률 제116호)에 규정한 학급 편제의 표준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도부현의 구역내의 시정촌입의 초등학교의 교직원에게 관계된 해당도부현의 정수	인
14 초등학교의 아동수	최근의 통계 법(昭和 22년 법률 제18호) 제3조에 규정한 지정 통계 조사(이하 『지정 통계 조사』라고 한다)로 학교에 관계된 것(이하 『학교 기본 조사』라고 한다)의 결과에 의한 해당 시정촌입의 초등학교에 재학한 취학 연령 아동의 수	인
15 초등학교의 학급수	공립 의무교육제 학교의 학급 편제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학급 편제의 표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시정촌입의 초등학교의 학급수	학급
16 초등학교의 학교수	최근의 학교 기본 조사의 결과에 의한 해당 시정촌입의 초등학교의 수	교
17 중학교의 교직원수	공립 의무교육제 학교의 학급 편제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학급 편제의 표준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도부현의 구역내의 시정촌입의 중학교 및 중등 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 및 해당도부현입의 중학교(학교교육법(昭和 2년 법률 제26호)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에 있어서 교육이라고 일관한 교육을 시행한 것에 한한다) 및 중등 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의 교직원에게 관계된 해당도부현의 정수	인
18 중학교의 학생수	최근의 학교 기본 조사의 결과에 의한 해당 시정촌입의 중학교(중등 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을 포함한다. 다음 호 및 제19호에 있어 동일)에 재학한 취학 연령 학생의 수	인
19 중학교의 학급수	공립 의무교육제 학교의 학급 편제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학급 편제의 표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시정촌입의 중학교의 학급수	학급

측정 단위의 종류	측정 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 단위
20 중학교의 학교수	최근의 학교 기본조사의 결과에 의한 해당 시정촌입의 중학교의 수	교
21 고등학교의 교직원 수	도부현에 있어서는 공립고등학교의 적정배치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 등에 관한 법률(昭和 36년 법률 제188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해당도부현입의 고등학교(중등 교육 학교의 후기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 있어 동일)의 교직원 정수(지방자치법(昭和 22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19 제1항의 지정 도시(이하 「지정 도시」라고 한다) 이외의 해당도부현의 구역내의 시정촌입의 고등학교의 정시제의 과정에 관계된 교장, 부 교장, 교감, 주간 교사, 지도 교사, 교사, 준교사 및 강사의 수를 포함한다), 시정촌에 있어서는 공립 고등학교의 적정배치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해당 시정촌입의 고등 학교의 교직원 정수(지정 도시 이외의 시정촌에 있어서는, 해당 시정촌입의 고등학교의 정시제의 과정에 관계된 교장, 부 교장, 교감, 주간 교사, 지도 교사, 교사, 준교사 및 강사의 수를 제외한다)	인
22 고등학교의 학생수	최근의 학교 기본 조사의 결과에 의한 해당 지방단체입의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 과정을 포함한다)에 재학한 학생의 수	인
23 특별 지원 학교의 교직원수	공립 의무교육제 학교의 학급 편제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학급 편제의 표준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도부현의 구역 내의 공립의 특별 지원 학교의 소학부 및 중학부의 교직원에게 관계된 해당도부현의 정수 및 공립 고등학교의 적정배치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도부현의 구역내의 공립의 특별 지원 학교의 고등부의 교직원에게 관계된 해당도부현의 정수	인

[부 록]

측정 단위의 종류	측정 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 단위
24 특별 지원 학교의 학급수	공립 의무교육제 학교의 학급 편제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학급 편제의 표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도부현립의 특별 지원 학교의 소학부 및 중학부의 학급수 및 최근의 학교 기본 조사의 결과에 의한 해당 도부현립의 특별 지원 학교의 고등부의 학급수	학급
25 고등 전문 학교 및 대학의 학생의 수	최근의 학교 기본 조사의 결과에 의한 해당 도부현립의 고등전문학교(해당 도부현이 지방독립행정법인법(平成 15년 법률 제 118호)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설립 단체인 동법 제68조 제1항의 공립 대학 법인이 설치한 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및 단기 대학의 학과 및 전공과 및 대학(해당 도부현이 동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설립 단체인 동법 제68조 제1항의 공립 대학 법인이 설치한 대학을 포함한다)의 학부, 전공과 및 대학원에 재학한 학생의 수	인
26 사립의 학교의 유아, 아동 및 학생의 수	최근의 학교 기본 조사의 결과에 의한 해당 도부현의 구역내의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 지원학교에 재학한 유아, 아동 및 학생의 수	인
27 유치원의 유아수	최근의 학교 기본 조사의 결과에 의한 해당 시정촌의 유치원에 재학한 유아 수	인
28 읍촌부 인구	관보로 공시된 최근의 국세 조사의 결과에 의한 해당도부현의 인구중 읍촌에 관계된 것	인
29 시의 부분 인구	관보로 공시된 최근의 국세 조사의 결과에 의한 해당시의 인구	인
30 65세 이상 인구	최근의 국세 조사의 결과에 의한 해당 지방단체의 65세 이상의 인구	인
31 75세 이상 인구	최근의 국세 조사의 결과에 의한 해당 지방단체의 75세 이상의 인구	인
32 농가수	최근의 농업에 관계된 지정 통계 조사(이하 『세계 농업 센서스』라고 한다)의 결과에 의한 해당 지방단체의 농가(농지법(昭和 27년 법률 제229호) 제2조 제7항에 규정한	호

측정 단위의 종류	측정 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 단위
	농업 생산 법인을 포함한다)의 수	
33 공유 이외의 임야의 면적	최근의 세계 농업 센서스의 결과에 의한 해당도부현의 임야(국유임야 및 도부현 및 분수림특별조치법(昭和 33년 법률 제57호) 제9조 제2호에 언급한 삼림정비법인(이하 『삼림정비법인』이라고 한다)이 관할한 임야를 제외한다)의 면적	헥타르
34 공유 임야의 면적	최근의 세계 농업 센서스의 결과에 의한 해당도부현의 구역 내의 도부현 및 삼림정비법인이 관할한 임야의 면적	헥타르
35 수산업 자수	최근의 어업에 관계된 지정 통계 조사의 결과에 의한 해당도부현의 수산업 자수	인
36 임업 및 수산업의 종업원수	최근의 국세 조사의 결과에 의한 해당 시정촌의 임업, 수산업 및 광업의 종업원 수	인
37 호적수	해당 시정촌의 호적법(昭和 22년 법률 제224호)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부에 기재된 호적 및 동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적부에 축적된 호적의 수	적
38 세대수	최근의 국세 조사의 결과에 의한 해당 시정촌의 세대수	세대
39 연금 수급권자수	연금법(大正 12년 법률 제48호)을 준용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전년도에 있어 해당도부현에서 연금을 받는 권리를 갖는 자 및 해당도부현의 퇴직연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전년도에 있어 해당도부현에서 퇴직연금을 받는 권리를 갖는 자의 수	인
40 재해복구 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때문에)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에 관계된 원리 상환금	(1) 국고의 부담금을 받고 시행한 재해복구 사업에 관계된 경비 또는 국가가 행한 재해복구 사업에 관계된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해당 연도에 있어서 원리 상환금 및 국고의 부담금을 받지 않고 시행한 재해복구 사업에 관계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된 지방채의 해당 연도에 있어서 원리 상환금((6)에 언급한 것을 제외한다)	1000엔

[부 록]

측정 단위의 종류	측정 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 단위
	<p>(2) 국고의 부담금을 받고 시행한 지반 침하, 지반 변동 또는 해안 잠식의 방제를 위한 사업에 관계된 경비 또는 국가가 행한 지반 침하, 지반 변동 또는 해안 잠식의 방제를 위한 사업에 관계된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된 지방채의 해당 연도에 있어서 원리 상환금</p> <p>(3) 국고의 부담금을 받고 시행한 재해에 수반한 긴급의 사방사업, 땅미끄럼 대책사업, 치산사업 또는 하천사업에 관계된 경비 또는 국가가 행한 재해에 수반한 긴급의 사방사업, 땅 미끄럼 대 사업, 치산사업 또는 하천사업에 관계된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된 지방채로 충무대신이 지정한 것이지만 해당 연도에 있어서 원리 상환금</p> <p>(4) 국고의 부담금을 받고 시행한 특수 토양 지대 재해 방제 및 진흥 임시조치법(昭和 27년 법률 제96호) 제3조 제1항의 사업 계획에 근거한 사업에 관계된 경비 또는 국가가 행한 해당 계획에 근거한 사업에 관계된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된 지방채로 충무대신이 지정한 것이지만 해당 연도에 있어서 원리 상환금</p> <p>(5) 국고의 보조금을 받고 시행한 임시 석탄 광해 복구법(昭和 27년 법률 제295호)의 규정에 근거한 광해 복구 사업에 관계된 경비 또는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시행한 광해 복구 사업에 대해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고, 또는 동법 제53조의 3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변하기 위해 필요로 한 경비 또는 동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된 지방채의 해당 연도에 있어서 원리 상환금</p>	

측정 단위의 종류	측정 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 단위
	(6) 격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원조 등에 관한 법률(昭和 37년 법률 제150호)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방채의 해당 연도에 있어서 원리 상환금	
41 벽지 대책 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에 관계된 원리 상환금	벽지에 관계된 공공적 시설의 종합 정비를 위한 재정상의 특별조치 등에 관한 법률(昭和 37년 법률 제88호) 제6조에 규정한 지방채에 관계된 해당 연도에 있어서 원리 상환금	1000엔
42 昭和 52 년도로부터 平成 십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국가의 보정예산 등에 관계된 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을 허가된 지방채에 관계된 원리 상환금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을 받고 시행한 사업에 관계된 경비 또는 국가 등이 행한 사업에 관계된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昭和 52년도로부터 平成 10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발행을 허가된 지방채로 해당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 또는 국등이 행한 사업이 해당 각 연도의 국가의 보정예산에 따라 추가된 세출 또는 국가의 공공사업 등 예비비의 사용에 관계된 것이지만 중 총무대신이 지정한 것에 관계된 해당 연도에 있어서 원리 상환금	1000엔
43 平成 11년도로부터 平成 14 년도까지 및 平成 16년도로부터 平成 19년 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국가의 보정예산 등에 관계된 사업비의 재원으로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을 받고 시행한 사업에 관계된 경비 또는 국가 등이 행한 사업에 관계된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平成 11년도로부터 平成 14년도까지 및 平成 16년도로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로 해당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 또는 국가 등이 행한 사업이 해당 각 연도의 국가의 보정예산에 따라 추가된 세출 또는 국가의 공공사업 등 예비	1000엔

[부 록]

측정 단위의 종류	측정 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 단위
<p>로 총당하기 위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p>	<p>비의 사용에 관계된 것이지만 중 총무대신이 지정한 것이지만 액</p>	
<p>44 지방세의 수입 감소 보전을 위해 昭和 62년도로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p>	<p>도부현에 있어서는 도부현민 세금의 소득할, 법인세할 및 이자할 및 법인이 행한 사업에 대한 영업세의 수입감소보전을 위해, 昭和 62년도로부터 平成 14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을 허가된 지방채의 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한액 및 平成 15년도로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한 액, 시정촌에 있어서는 시정촌민세의 소득할 및 법인세할 및 지방세법(昭和 25년 법률 제226호) 제71조의26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에 대하여 교부하게 된 이자와 관계된 교부금(이하 『이자할교부금』이라고 한다)의 수입 감소보전을 위해 昭和 62년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한 액</p>	<p>1000엔</p>
<p>45 지역 재정 특례 대책을 위해 昭和 62년도로부터 平成 5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을 허가된 지방채의 액</p>	<p>행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당면한 조치의 일환으로서의 국가의 보조금등의 감축 그 밖의 임시의 특례 조치에 관한 법률(昭和 56년 법률 제93호)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특례 부담액 또는 특례 보조액의 감액 또는 지방채의 이자 보급액의 감액 그 밖에 행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당면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된 토지개발법(昭和 24년 법률 제195호)의 규정 등에 근거한 특정 지역에 관계된 국가의 부담액 또는 보조액의 감액에 수반하고 이</p>	<p>1000엔</p>

측정 단위의 종류	측정 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 단위
	러한 감액에 의한 지방부담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昭和 62년도로부터 平成 5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을 허가된 지방채의 액	
46 임시 재정 특례 대책을 위해 昭和 62년도(시정촌에 있어서는, 昭和 63년도)로부터 平成 12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을 허가된 지방채의 액	국가의 보조금등의 정리 및 합리화 및 임시 특례 등에 관한 법률(昭和 60년 법률 제 37호)(平成 원년 법률 제22호), 국가의 보조금등의 임시 특례 등에 관한 법률(昭和 61년 법률 제46호)(平成3년 법률 제15호)등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법률의 규정등에 근거한 昭和 60년도로부터 平成 4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의 비율이 내리고 조치에 수반하고, 도로, 하천, 항만 그 밖의 토목 시설등의 공공 시설 또는 공용 시설의 건설 사업등에 관계된 국가의 부담액 또는 보조액의 감액에 의한 지방 부담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昭和 62년도(시정촌에 있어서는 昭和 63년도)로부터 平成 12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을 허가된 지방채의 액	1000엔
47 平成 6년도로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의 재원 대책을 위해 해당각 연도에 있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	일반공공사업, 공항정비사업, 공원녹지정비사업, 의무교육시설 및 폐기물처리 시설의 건설 사업등에 관계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 平成 6년도로부터 平成 15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 중 해당 각 연도의 재원 대책을 위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로서 총무대신이 지정한 액	1000엔
48 개인의 도부현 민 세금 또는 시정촌 민세에 관계된 특별 감	(1) 지방세법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平成 6년 법률 제111호. 이하 『지방세법등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4의 규정에	1000엔

[부 록]

측정 단위의 종류	측정 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 단위
<p>세 등에 의한 平成 6년도로 부터 平成 8년 도까지 및 平 成 10년도로부 터 平成 18년 도까지의 각 연 도의 수입 감 소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각 연 도에 있어 특 별하게 일으키 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p>	<p>의한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정촌 민세에 관계된 특별 감세에 의한 平成 6년도 및 平成 7년도의 수입 감소액</p> <p>(2) 소득세법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平成 19년 법률 제6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조세특별조치 법(昭和 32년 법률 제26호) 제86조의4 제1항에 규정한 보통승용자동차의 양도 등에 관계된 소비세의 과세율의 특례의 적용 기간종료에 의한 平成 6년도에 있어서 소비세의 수입의 감소에 수반한 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대하여 양여된 소비양여세의 액의 감소에 의한 동년도 및 平成 7년도의 수입감소액</p> <p>(3) 지방세법 등 개정법의 시행에 의한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정촌 민세의 平成 6년도로부터 平成 8년도까지의 각 연도의 수입 감소액</p> <p>(4) 지방세법 및 국유자산 등 소재 시정촌 교부금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平成 9년 법률 제9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정촌 민세에 관계된 특별 감세에 의한 平成8년도의 수입 감소액</p> <p>(5) 지방세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平成 11년 법률 제15호)에 의한 개정전의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정촌 민세에 관계된 특별 감세에 의한 平成 10년도 및 平成 11년도의 수입 감소액</p> <p>(6) 지방세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平成 11년 법률 제15호)에 의한 개정전의 지방세법 부칙 제11조의4 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취득세의 감액에 관계</p>	

측정 단위의 종류	측정 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 단위
	<p>된 平成 10년도의 수입 감소액</p> <p>(7) 지방교부세법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平成 18년 법률 제8호) 제8조에 의한 개정전의 지방 특례 교부금등의 지방재정의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平成 11년 법률 제17호)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平成 11년도로부터 平成 15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일으키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p> <p>(8) 지방재정법(昭和 23년 법률 제109호) 제33조의5의4의 규정에 따라 平成 15년도로부터 平成 18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p>	
<p>49 임시 세수 보전을 위해 平成 9년도에 있어 특별하게 일으키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p>	<p>도부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도부현의 平成 9년도의 지방 소비세의 수입 전망액 및 소비 양여세 상당액(지방세법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平成 6년 법률 제111호) 부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년도에 양여된 폐지전의 소비 양여세에 상당한 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 동일)의 수입 전망액의 합산액으로부터 지방 소비세 교부금(지방세법 제72조의 115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된다 지방 소비세에 관계된 교부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 동일)의 교부 전망액을 공제한 액이 해당도부현의 平成십년도 이후의 각 연도의 지방 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지방 소비세 교부금의 교부 전망액을 공제한 액에 비하고 과소라고 인정된 액으로서 산정한 액, 시정촌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사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정촌의 平成9년도의 지방 소비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 및 소비 양여세 상당액의 수입 전망액의 합산액이 해당 시</p>	<p>1000엔</p>

[부 록]

측정 단위의 종류	측정 단위의 수치 산정의 기초	표시 단위
	정촌의 平成 10년도 이후의 각 연도의 지방 소비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에 비하고 과소라고 인정된 액으로서 산정한 액	
50 임시재정 대책을 위해 平成 13년도로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일으키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1) 지방교부세법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平成 15년 법률 제10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지방재정법 제33조의5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平成 13년도 및 平成 14년도에 있어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2) 지방교부세법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平成 16년 법률 제18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지방재정법 제33조의 5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平成 15년도에 있어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3) 지방교부세법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平成 19년 법률 제24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지방재정법 제33조의5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平成 16년도로부터 平成 18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4) 지방재정법 제33조의5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平成 19년도에 있어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1000엔

- 4 제1항의 측정 단위마다의 단위 비용은 별표 제1에 정한 바대로 한다.
- 5 제2항의 측정 단위마다의 단위 비용은 별표 제2에 정한 바대로 한다.
- 6 지방 행정에 관계된 제도의 개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전2항의 단위 비용을 변경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폐회중인 때에 한하여 정령으로 전2항의 단위 비용에 관한 특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이 법률

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측정 단위의 수치의 보정)

제13조 면적, 고등학교의 학생수, 그 밖의 측정 단위에 있어서 그 종류마다 단위당의 비용에 차이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그 종류별 단위당 비용의 차이에 따라 해당 측정 단위의 수치를 보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측정 단위의 수치의 보정(이하 「종별보정」이라고 한다)은 해당 측정단위의 종별의 수치에 그 단위당 비용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총무성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다.

3 전조 제3항 및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측정 단위의 수치는 지방단체마다 해당 측정 단위에 대해 다음 각호에 언급한 사항을 기초로서 제4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정 계수를 곱하고 보정한 것으로 한다.

1 인구 그 밖에 측정 단위의 수치의 다소에 의한 단계

2 인구 밀도, 도로1킬로미터 당의 자동차 대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지방단체의 태용(態容)

4 한랭도 및 적설도

4 전항의 측정 단위의 수치에 관계된 보정계수는 경비의 종류마다, 또한 측정 단위마다 각각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을 기초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한다.

1 전항 제1호의 보정(이하 「단계보정」이라고 한다)은 해당 행정에 필요로 한 경비의 액이 측정 단위의 수치의 증감에 따라 체감 또는 체증한 것으로 하고, 해당 단계보정에 관계된 계수는 초과 누퇴 또는 초과 누진의 방법에 따라 총무 성령으로 정한 비율을 이용하고 산정한 수치를 해당율을 이용하지

않고 산정한 수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 행정 권능 등의 차이가 있는 것에 의하고 경비의 액이 고가 또는 저가가 되기 때문에 제3호 이의 보정이 적용된 경비에 관해서는 해당 경비의 측정 단위의 수치에 해당 고가가 되거나 저가가 된 도합에 따르고 총무 성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수치를 이용하고 해당 단계보정에 관계된 계수를 산정한 것으로 한다.

2 전항 제2호의 보정(이하 『밀도보정』이라고 한다)은 해당 행정에 필요로 한 경비의 액이 인구 밀도, 도로1킬로미터 당의 자동차 대수 그 밖에 이것들에 유사한 것(이하 이 호에 있어 『인구밀도 등』이라고 한다)의 증감에 따르고 체감 또는 체증한 것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해당 밀도보정에 관계된 계수는 초과 누퇴 또는 초과 누진의 방법에 의하고, 총무성령으로 정한 비율을 이용하고 산정한 인구밀도 등을 해당율을 이용하지 않고 산정한 인구 밀도 등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전항 제3호의 보정(이하 『태용보정』이라고 한다)은 해당 행정에 필요로 한 경비의 측정단위당의 액이 지방단체의 태용에 따르고 각각 고가가 되고 또는 저가가 된 것에 붙고 행한 것으로 하고 해당 태용보정에 관계된 계수는 다음에 언급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도부현의 태용에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해당 도부현의 구역내의 시정촌에 관하여 행정의 질 및 양의 차 또는 행정권능 등의 차이에 근거하고 고가가 되고 또는 저가가 된 도합을 기초로서 시정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종류에 따라 총무성령으로 정한 비율을 해당 구역내의 시정촌의 종류마다의 측정 단위의 수치(해당 시정촌의 종류마다의 측정 단위의 수치에 의한 것이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비

로 총무 성령으로 정한 것에 관해서는, 인구 그 밖에 총무 성령으로 정한 수치)를 곱하여 얻은 수치를 합산한 수치를 해당율을 곱하지 않고 산정한 시정촌 마다의 수치를 합산한 수치로 나누어 산정한다.

나. 시정촌의 태용에 관계된 것에 있어서 행정의 질 및 양의 차 또는 행정권능 등의 차이에 거하고 그 고가가 되고 또는 저가가 된 도합을 기초로서 시정촌의 종류에 따라 총무 성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하고 산정한 수치를 해당율을 곱하지 않고 산정한 수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초등학교비, 중학교비, 사회복지비, 노동비 그 밖의 경비로 총무 성령으로 정한 것에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인구의 연령별 구성, 공공시설의 정비 상황 그 밖에 지방단체의 태용에 따르고 해당 경비를 필요로 한 도합에 관하여 총무 성령으로 정한 지표에 의하고 측정된 총무 성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하고 산정한 수치를 해당율을 곱하지 않고 산정한 수치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전항 제4호의 보정(이하 『한랭보정』이라고 한다)은 해당 행정에 필요한 경비의 측정단위당의 액이 한랭 또는 적설의 도합에 의하여 할고(고가가 된 것)으로 하고, 해당 한랭보정에 관계된 계수는 그 고가가 된 급여의 차이, 한랭의 차액 또는 적설의 차액마다 지역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고가가 된 도합을 기초로서 총무 성령으로 정한 비율을 해당 지역에 있어서 측정 단위의 수치(해당 지역에 있어서 측정 단위의 수치에 의할 수 없거나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비로 총무성령으로 정한 것에 관해서는, 인구)를 곱하여 얻은 수를 해당율을 이용하지 않고 산정한 수치로 나누어 얻은 수치의 합계수에 1을 더하여 산정한다.

[부 록]

5 전조 제1항의 측정 단위의 수치에 관해서는 제11항에 정한 것 외에, 지방단체의 종류마다 다음 표의 경비의 종류 란에서 언급한 경비에 관계된 측정 단위의 난에서 언급한 측정 단위에 관하여, 각각 보정의 종류의 란에 언급한 보정을 행한다.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 정 단 위	
도부현	1 경찰비	경찰직원수	
	2 토목비		
	1 도로교이용비		도로의 면적
			도로의 연장
	2 하천비	하천의 연장	
	3 항만비		항만에 있어서 계류 시설의 연장
			항만에 있어서 외곽 시설의 연장
			어항에 있어서 외곽 시설의 연장
	4 그 밖의 토목비	인구	
	3 교육비		
	1 초등학교비	교직원 수	
	2 중학교비	교직원 수	
	3 고등학교비		교직원 수
			학생 수
	4 특별지원학교비		교직원 수
			학급수
	5 그 밖의 교육비		인구
			고등 전문 학교 및 대학의 학생의 수
			사립의 학교의 유아, 아동 및 학생의 수
	4 후생노동비		
	1 생활보호비	읍촌부 인구	
	2 사회복지비	인구	
	3 위생비	인구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 정 단 위
	4 고령자 보건 복지비	65세 이상 인구
	5 노동비	인구
	5 산업경제 비	
	1 농업행정비	농가수
	2 임야행정비	공유 이외의 임야의 면적
	3 수산행정비	수산업 자수
	4 상공행정비	인구
	6 총무비	
	1 징세비	세대수
	2 지역진흥비	인구
	7 재해복구비	재해복구 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때문에)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에 관계된 원리 상환금
	8 보정예산채 상환비	昭和 52년도로부터 平成 10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국가의 보정예산 등에 관계된 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을 허가된 지방채에 관계된 원리 상환금
		平成 11년도로부터 平成 14년도까지 및 平成 16년도로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국가의 보정예산등에 관계된 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
	9 지방세 수입 감소 보전채 상환비	지방세의 수입 감소 보전을 위해 昭和 62년도로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
10 지역 재정 특례 대책채 상환비	지역 재정 특례 대책을 위해 昭和 62년도로부터 平成 5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을 허가된 지방채의 액	

[부 록]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추 정 단 위
	11 임시 재정 특례채 상환비	임시 재정 특례 대책을 위해 昭和 62년도로부터 平成 12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을 허가된 지방채의 액
	12 재원 대책채 상환비	平成6년도로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의 재원 대책을 위해 해당각 연도에 있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
	13 감세 보전채 상환비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에 관계된 특별 감세등에 의한 平成6년도로부터 平成8년도까지 및 平成 10년도로부터 平成 18년도까지의 각 연도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때문에) 해당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일으키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14 임시 세수 보전채 상환비	임시 세수 보전을 위해 平成 9년도에 있어 특별하게 일으키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15 임시 재정 대책채 상환비	임시 재정 대책을 위해 平成 13년도로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일으키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시정촌	1 소방비	인구
	2 토목비	
	1 도로교이용비	도로의 면적
		도로의 연장
	2 항만비	항만에 있어서 계류 시설의 연장
		항만에 있어서 외곽 시설의 연장
		어항에 있어서 계류 시설의 연장
		어항에 있어서 외곽 시설의 연장
	3 도시계획비	도시계획구역에 있어서 인구
	4 공원비	인구
5 하수도비	인구	
6 그 밖의 토목비	인구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 정 단 위
	3 교육비	
	1 초등학교비	아동수 학급 수 학교 수
	2 중학교비	학생수 학급 수 학교 수
	3 고등학교비	교직원수 학생수
	4 그 밖의 교 육비	인구 유치원의 유아 수
	4 후생비	
	1 생활보호비	시의 부분 인구
	2 사회복지비	인구
	3 보건위생비	인구
	4 고령자 보건 복지비	65세 이상 인구
	5 청소비	인구
	5 산업경제비	
	1 농업행정비	농가수
	2 임야수산행정비	임업 및 수산업의 종업원수
	3 상공행정비	인구
	6 총무비	
	1 징세비	세대수
	2 가적 주민 기 본 대장비	가적수 세대수
	3 지역진흥비	인구 면적

[부 록]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 정 단 위
	7 재해복구비	재해복구 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때문에)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에 관계된 원리 상환금
	8 보정예산채 상환비	昭和 52년도로부터 平成 10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국가의 보정예산 등에 관계된 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때문에) 발행을 허가된 지방채에 관계된 원리 상환금
	9 지방세 수입 감소 보전채 상환비	平成 11년도로부터 平成 14년도까지 및 平成 16년도로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국가의 보정예산 등에 관계된 사업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
	10 지역 재정 특례 대책채 상환비	지방세의 수입 감소 보전을 위해 昭和 62년도로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
	11 임시재정 특례채 상환비	지역 재정 특례 대책을 위해 昭和 62년도로부터 平成 5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을 허가된 지방채의 액
	12 자원 대책채 상환비	임시재정 특례대책을 위해 昭和 63년도로부터 平成 12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발행을 허가된 지방채의 액
	13 감세 보전채 상환비	平成 6년도로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의 자원 대책을 위해 해당각 연도에 있어 발행에 관하여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지방채의 액
	13 감세 보전채 상환비	개인의 시정촌 민세에 관계된 특별 감세등에 의한 平成 6년도로부터 平成 8년도까지 및 平成 10년도로부터 平成 18년도까지의 각 연도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일으키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지방단체의 종류	경비의 종류	측 정 단 위
	14 임시 세수 보전채 상환비	임시 세수 보전을 위해 平成 9년도에 있어 특별하게 일으키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15 임시 재정 대책채 상환비	임시 재정 대책을 위해 平成 13년도로 부터 平成 19년도까지의 각 연도에 있어 특별하게 일으키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지방채의 액

- 6 전조 제2항의 측정 단위의 수치에 관해서는, 도부현 또는 시정촌마다, 인구에 있어서는 단계보정을, 면적에 있어서는 종별보정을 행한다.
- 7 단계보정, 밀도보정, 태용보정 및 한랭보정 중 2 이상을 합하고 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측정 단위의 수치에 관계된 보정 계수는 2 이상의 사유를 통하여 1의 비율을 정하거나 각 사유마다 산정한 비율(2 이상의 사유를 통하여 정한 비율을 이용하고 산정한 비율을 포함한다)을 총무 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승 또는 가산하고 얻은 비율에 의한다.
- 8 태용보정을 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4항 제3호의 시정촌은,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인구집중지구 인구, 경제구조 그 밖에 행정의 질 및 양의 차이를 표현한 지표마다 산정한 점수에 근거하고 구분하거나 행정권능 등의 차이에 의하여 구분한다.
- 9 한랭보정을 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4항 제4호의 지역은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급여의 차이, 한랭의 차 및 적설의 차액다, 시정촌의 구역에 의하여 구분한다.
- 10 인구, 학교수 그 밖의 측정 단위의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는 감소한 지방단체, 폐치분합 또는 경계 변경이 있던 지방단체 및 조합(지방자치법 제284조제1항의1 부 사무조합, 광역

[부 록]

연합 또는 사무소 사무조합을 말한다)을 조직하고 있는 지방 단체에 관계된 보정 계수의 산정방법 및 측정 단위의 수치의 보정후의 수치의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총무성령으로 전각항의 규정의 특례를 설치할 수 있다.

- 11 재해복구비에 관계된 측정 단위의 수치에 관해서는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수치의 해당 지방단체의 세수입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정한다.
- 12 전 각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보정계수의 산정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총무성령으로 정한다.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

제14조 기준재정수입액은, 도부현에 있어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도부현의 보통세(법정의 보통세를 제외한다) 및 자동차 취득세 및 경유 인수세의 수입 전망액(이자할의 수입 전망액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도부현의 이자할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이자할 교부금의 교부 전망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한 액을 공제한 액으로 하여, 배당할의 수입 전망액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도부현의 배당할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지방세법 제71조의47의 규정에 의하고 시정촌에 대하여 교부한다. 배당 비교적 관계된 교부금(이하 「배당할 교부금」이라고 한다)의 교부 전망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한 액을 공제한 액으로 하여, 주식 등 양도소득할의 수입 전망액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도부현의 주식 등 양도소득할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동법 제71조의67의 규정에 의하고 시정촌에 대하여 교부한다. 주식 등 양도소득 비교적 관계된 교부금(이하 「주식 등 양도소득할 교부금」이라고 한다)의 교부 전망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한 액을 공제한 액으로 하여, 지방 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에 관해

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도부현의 지방 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동법 제72조의 115의 규정에 의하고 시정촌에 대하여 교부한다. 지방 소비세에 관계된 교부금(이하 「지방소비세교부금」이라고 한다)의 교부 전망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한 액을 공제한 액으로 하여, 골프장 이용세의 수입 전망액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도부현의 골프장 이용세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고 골프장 소재의 시정촌에 대하여 교부한다. 골프장 이용세에 관계된 교부금(이하 「골프장이용세교부금」이라고 한다)의 교부 전망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한 액을 공제한 액으로 하여, 자동차 취득세의 수입 전망액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도부현의 자동차 취득세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동법 제699조의32의 규정에 의하고 시정촌에 교부한다. 자동차 취득세에 관계된 교부금(이하 「자동차 취득세 교부금」이라고 한다)의 교부 전망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한 액을 공제한 액으로 하여, 도로법 제7조 제3항의 시(이하 「지정시」라고 한다)를 포괄한 도부현의 경유 인수세의 수입 전망액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도부현의 경유 인수세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지방세법 제700조의49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지정시에 대하여 교부한다. 경유 인수세에 관계된 교부금(이하 「경유 인수세 교부금」이라 한다)의 교부 전망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한 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해당도부현의 지방세법 제485조의 13의 규정에 의하고 도도부현에 대하여 교부한다. 시정촌 담배소비세에 관계된 교부금(이하 「시정촌 담배소비세 도도부현 교부금」이라고 한다)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액, 해당도부현의 지방도로 양여세, 석유 가스 양여세 및 항공기 연료 양여세의 수입 전망액 및 기준율로써 산정한 해당도부현의 국유 자산등 소재 시정촌 교부금 법(昭和 31년 법률 제82호) 제14조 제1항의 국유 자

[부 록]

산등 소재 도도부현 교부금(이하 「도도부현 교부금」이라고 한다)의 수입 전망액의 합산 액, 시정촌에 있어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 시정촌의 보통세(법정의 보통세를 제외한다) 및 사업소세의 수입 전망 액(시정촌 담배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 시정촌의 시정촌 담배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시정촌 담배소비세 도도부현 교부금의 교부 전망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한 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해당 시정촌의 이자할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액, 해당 시정촌의 배당할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액, 해당 시정촌의 주식등 양도소득할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액, 해당 시정촌의 지방 소비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액, 해당 시정촌의 골프장 이용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액, 해당 시정촌의 자동차 취득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액, 해당 시정촌의 특별과 것 양여세, 지방도로 양여세, 자동차 중량 양여세 및 항공기 연료 양여세의 수입 전망액 및 기준율로써 산정한국유 자산 등 소재 시정촌 교부금법 제2조 제1항의 국유 자산 등 소재 시정촌 교부금(이하 「시정촌 교부금」이라고 한다)의 수입전망액의 합산액(지정시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 지정시의 보통세(법정의 보통세를 제외한다) 및 사업소세의 수입전망액(시정촌 담배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에 관해서는, 기준 과세율로써 산정한 해당 지정시의 시정촌 담배소비세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시정촌 담배소비세 도도부현 교부금의 교부 전망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한 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해당 지정시의 이자할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액, 해당 지정시의 배당할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액, 해당 지정시의 주식등 양도소득할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액, 해당 지정시의 지방 소비세 교부금

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액, 해당 지정시의 골프장 이용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액, 해당 지정시의 자동차 취득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액, 해당 지정시의 경유 인수세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100분의 75의 액, 해당 지정시의 특별과 것 양여세, 지방도로 양여세, 석유 가스 양여세, 자동차 중량 양여세 및 항공기 연료 양여세의 수입 전망액 및 기준을 로써 산정한 해당 지정시의 시정촌 교부금의 수입 전망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 2 전항의 기준 과세율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 말한 표준과세율(표준 과세율의 정함이 없는 지방세에 관해서는 동법에 정한 과세율로 한다)의 도부현이 지방이나 기업에게 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100분의 75에 상당한 비율(동법 제72의24의4에 규정한 과세표준에 의하고 부과한 영업세에 관해서는 해당 도부현이 동법 제72의24의7 제8항의 규정에 의하고 정한 과세율을 기초로서 총무 성령으로 정한 비율의 100분의 75에 상당한 비율로 한다), 시정촌세에 있어서는 100분의 75에 상당한 비율로 하여, 전항의 기준율은 도도부현 교부금에 있어서는 국유 자산 등 소재 시정촌 교부금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비율의 100분의 75에 상당한 인솔하고, 시정촌 교부금에 있어서는 동항에 규정한 비율의 100분의 75에 상당한 비율로 한다.
- 3 제1항의 기준 재정 수입액은 다음 표의 상란에 언급한 지방단체에 관하여, 각각 동표의 중란에 언급한 수입의 항목마다 해당 하란에 언급한 산정의 기초에 따라 총무성령으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부 록]

지방단체의 종류	수입의 항목	기준 세액 등의 산정의 기초	
도부현	1 도부현민 세금		
	1 균등할	전년도분의 균등할의 과세의 기초가 된 납세의무자 수	
	2 소득할	전년도분의 소득할의 과세의 기초가 된 납세의무자등의 수 및 과세표준 등의 액	
	3 법인세할	해당도부현의 구역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갖는 법인에 관계된 전년도분의 법인세할의 과세표준 등의 액	
	4 이자할	전년도의 이자할의 과세표준 등의 액	
	5 배당할	전년도의 배당할의 과세표준 등의 액	
	6 주식등 양도 소득할	전년도의 주식 등 양도소득할의 과세표준 등의 액	
	2 영업세		
	1 개인이 행한 사업에 대한 영업세	전년도분의 개인의 영업세의 과세의 기초가 된 과세표준의 수치 및 납세의무자 수	
	2 법인이 행한 사업에 대한 영업세	해당도부현의 구역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갖는 법인에 관계된 전년도분의 영업세의 과세표준 등의 수치	
	3 지방소비세		
	1 양도할	전년도의 양도할의 과세표준 등의 액	
	2 화물할	전년도의 화물할의 과세표준 등의 액	
	4 부동산취득세	전년도 및 이전 연도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등의 액	
	5 도부현 담배소비세	전년도의 도부현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수량	
	6 골프장 이용세	해당도부현에 소재 하는 골프장의 서무, 출납등을 맡던 사람 원	
	7 자동차세	해당도부현의 구역내에 고정장을 갖는 자동차의 대수	

지방단체의 종류	수입의 항목	기준 세액 등의 산정의 기초
	8 광구세	광업법(昭和 25년 법률 제289호) 제59조에 규정한 광업 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광구의 면적(지방세법 부칙 제13조에 규정한 광구에 있어서는, 해당 광구에 관계된 강바닥의 연장) 및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 의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한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昭和 53년 법률 제81호) 제32조에 규정한 특정 광업 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 개발 광구의 면적
	9 고정자산세	해당도부현의 구역 내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349조의4에 규정한 대규모의 상환 자산 또는 동법 제349조의5에 규정한 신설 대규모 상환 자산으로 동법 제740조의 규정에 의하고 해당 도부현이 고정자산세를 과할 수 있는 것에 관계된 해당 연도의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이 된 것이 당연 액의 합계액으로부터 동법 제349조의4 또는 제349조의5의 규정에 의하고 시정촌이 과할 수 있는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액
	10 자동차 취득세	전년도중에 있어서 해당도부현의 구역 내에 고정장을 갖았던 자동차의 취득건수
	11 경유 인수세	전년도의 경유 인수세에 관계된 과세표준인 수량
	12 시정촌 담배 소비세 도도부현 교부금	해당 도도부현이 포괄한 시정촌의 전년도의 시정촌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수량 등
	13 지방도로 양	전년도의 지방도로 양여세의 양여 액

[부 록]

지방단체의 종류	수입의 항목	기준 세액 등의 산정의 기초
	여세	
	14 석유 가스 양여세	전년도의 석유 가스 양여세의 양여 액
	15 항공기 연료 양여세	전년도의 항공기 연료 양여세의 양여 액
	16 도도부현 교부금	해당도부현의 구역내에 있어서 국유 자산 등 소재 시정촌 교부금 법제5조 제1항에 규정한 대규모의 상환 자산 또는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신설 대규모 상환 자산으로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해당도부현에 도도부현 교부금이 교부 된 것이 당연 것에 관계된 해당 연도의 교부금 산정 표준액(동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교부금 산정 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 동일)의 합계액으로부터 동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시정촌에 교부 된 것이 당연 시정촌 교부금에 관계된 해당 대규모의 상환 자산 또는 신설 대규모 상환 자산의 교부금 산정 표준액을 공제한 액
시정촌	1 시정촌 민세	
	1 균등할	전년도분의 균등할의 과세의 기초가 된 납세의무자 수
	2 소득할	전년도분의 소득할의 과세의 기초가 된 납세의무자등의 수 및 과세표준 등의 액
	3 법인세할	해당 시정촌의 구역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갖는 법인에 관계된 전년도분의 법인세할의 과세표준등의 액
	2 고정자산세	
	1 토지	해당 시정촌에 있어서 토지의 지목마다의

지방단체의 종류	수입의 항목	기준 세액 등의 산정의 기초
		일 평방미터당의 평균 가격 및 그 지적
	2 가옥	해당 시정촌에 있어서 가옥의 일 평방미터 정답의 평균 가격 및 바닥 면적
	3 상환 자산	(1) 지방세법 제389조의 규정에 의하고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가격을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을 배분한 것 해당 배분 액 (2) 그 밖의 상환 자산 해당 시정촌이 과할 수 있는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이 된 당연 액
	3 경자동차세	해당 시정촌의 구역내에 고정장을 갖는 경자동차의 종류별의 대수
	4 시정촌 담배소비세	전년도의 시정촌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수량
	5 광산물세	광물의 생산량 및 야마모토 가격
	6 특별토지보유세	전년도에 있어서 특별토지보유세의 과세표준 액
	7 사업소세	전년도에 있어서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액(해당 연도에 있어 새롭게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이 된 시에 있어서는 해당 연도에 있어서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된 당연 종업원 급여 총액)
	8 이자할 교부금	전년도의 이자할 교부금의 교부 액
	9 배당할 교부금	전년도의 배당할 교부금의 교부 액
	10 주식등 양도소득할 교부금	전년도의 주식 등 양도소득할 교부금의 교부 액
	11 지방 소비세 교부금	전년도의 지방 소비세 교부금의 교부 액
	12 골프장 이용세 교부금	해당 시정촌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서무, 출납 등을 맡던 사람 원
	13 자동차 취득	전년도의 자동차 취득세 교부금의 교부액

[부 록]

지방단체의 종류	수입의 항목	기준 세액 등의 산정의 기초
	세 교부금	
	14 경유 인수세 교부금	전년도의 경유 인수세 교부금의 교부액
	15 특별과 것 양여세	전년도의 특별과 것 양여세의 양여액
	16 지방도로 양여세	전년도의 지방도로 양여세의 양여액
	17 석유 가스 양여세	전년도의 석유 가스 양여세의 양여액
	18 자동차 중량 양여세	전년도의 자동차 중량 양여세의 양여액
	19 항공기 연료 양여세	전년도의 항공기 연료 양여세의 양여액
	20 시정촌 교부금	국유 자산등 소재 시정촌 교부금 법 제 7조, 제8조 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각 성 각청의 장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장이 해당 고정자산의 소재지 시정촌장에 통지한 고정자산의 가격

(지방세의 과세면제 등에 수반한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의 특례)
 제14조의 2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시정촌이 다음 각호에 언급한 토지 또는 가옥에 대한 고정자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해당 고정자산세에 관계된 불균일의 과세를 한 경우에 있어 그 조치가 정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정촌의 각 연도에 있어서 기준 재정수입액은 동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시정촌의 해당 각 연도의 수입감소액 중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정촌의 해당 각 연도(그 조치가 총무

성령으로 정한일 이후에 있어 행할 때는 해당수입감소액에 관하여 해당 각 연도의 다음연도)에 있어서 기준재정수입액이 된 것이 당연액으로부터 공제한 액으로 한다.

- 1 문화재보호법 (昭和 25년 법률 제214호)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지정을 받았던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지정을 받았던 특별 사적, 특별 명승 또는 특별 천연기념물인 토지
- 2 고도에 있어서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昭和 31년 법률 제1호)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지정을 받았던 특별보존지구(동법 제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존지구로서 동법의 규정이 적용된 지구를 포함한다)의 구역 내에 있어서 가옥 또는 토지

(특별교부세의 액의 산정)

제15조 특별교부세는 제11조에 규정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에 의하고 은 보 따르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준재정수입액에 현저하게 과대하게 산정된 재정수입이 있는 경우, 교부세의 액의 산정기일 후에 생긴 재해(그 복구에 필요로 한 비용이 국가의 부담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의 획일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과대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과소를 고려하거나 보통교부세의 액이 재정수요에 비하고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단체에 대하여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정을 고려하여 교부한다.

- 2 총무대신은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하

[부 록]

고 각 지방단체에 교부해야 할 특별교부세의 액을 매년도 2회로 나누고 결정된 것으로 하고, 그 결정은 제1회제는 12월 중에, 제2회제는 3월 중에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 제1회제의 특별교부세의 액의 결정은 그 총액이 해당 연도의 특별교부세의 총액의 3분의 1에 상당한 액 이내의 액이 되도록 한다.

3 총무대신은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고 특별교부세의 액을 결정할 때는 이를 해당 지방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교부기간)

제16조 교부세는 매년도 좌의 표의 상란에 언급한 시기에 각각의 하란에 정한 액을 교부한다. 단, 4월 및 6월에 있어 교부해야 할 교부세에 관해서는 해당 연도에 있어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액이 전년도의 보통교부세의 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지방단체 또는 전년도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의 교부를 받았지만 해당 연도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의 교부를 받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지방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교부해야 할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교부기간	교부기간마다 교부해야 할 액
4월 및 6월	전년도의 해당 지방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액에 해당 연도의 교부세의 총액의 전년도의 교부세의 총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의 각각 4분의 1에 상당한 액
9월	해당 연도에 있어 교부해야 할 해당 지방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액으로부터 4월 및 6월에 교부한 보통교부세의 액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에 상당한 액
11월	해당 연도에 있어 교부해야 할 해당 지방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액으로부터 이미 교부한 보통 교부세의 액을 공제한 액
12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중에 총무대신이 결정된 액
3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중에 총무대신이 결정된 액

2 해당 연도의 국가의 예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예산의

추가 또는 수정에 의하여 교부세의 총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규모 재해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교부세의 교부기간 및 교부기간마다 교부해야 할 액에 관해서는, 국가의 잠정 예산의 액 및 그 성립의 상황, 교부세의 총액의 변경의 정도, 전년도의 교부세의 액, 대규모 재해에 의한 특별한 재정 수요의 액등을 감안하여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3 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부기간에 교부를 받았던 교부세의 액이 해당 연도분으로서 교부를 받는 당연 교부세의 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도부현 또는 시정촌은 그 초과액을 지체 없이 국가에 환부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경우에 있어 4월 1일 이전 1년 내 및 4월 2일로부터 해당 연도의 보통교부세의 4월 또는 6월에 교부해야 할 액이 교부되기까지의 사이에 지방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 변경이 있던 경우에 있어서 전년도의 관계 지방단체의 교부세의 액의 산정방법은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총무성령으로 정한다.

(시정촌 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에 관한 도도부현지사의 의무)

제17조 도도부현 지사는 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내에 있어서 시정촌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액의 산정 및 교부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사무를 다루기 위해 해당 시정촌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국세에 관한 서류의 열람 또는 기록)

제17조의2 도도부현 지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시정촌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액을 산정한 경우에 있어 시정촌에 관계된 제14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에 대하여

[부 록]

그 기초에 이용한 국세의 과세기초가 된 당연 소득액 및 과세액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또는 기록한 것을 청구할 때에는 정부는 관계서류를 도도부현지사 또는 그 지정한 직원에게 열람케 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교부세의 액의 산정에 이용한 자료에 관한 검사)

제17조의3 총무대신은 도도부현 및 정령으로 정한 시정촌에 관하여 교부세의 액의 산정에 이용한 자료에 관하여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2 도도부현지사는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내에 있어서 시정촌(전항의 정령으로 정한 시정촌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교부세의 액의 산정에 이용한 자료에 관하고 검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총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부세의 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의견신청)

제17조의4 지방단체는 교부세의 액의 산정방법에 관해 총무대신에 대하여 의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시정촌에 있어서는 해당 의견의 신청은 도도부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2 총무대신은 전항의 의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성실히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의 결과를 지방재정심의회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여야 한다.

(교부세의 액에 관한 심사의 신고)

제18조 지방단체는 제10조 제4항 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고 교부세의 액의 결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았던 경우에 있어 해당 지방단체에 대한 교부세의 액의 산정의 기초에 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통지를 받았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무대신에 대하여 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시정촌에 있어서는 해당 심사의 신고는 도도부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2 총무대신은 전항의 심사의 신고를 받았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받았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촌의 심사의 신고에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해당 통지는 도도부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교부세의 액의 산정에 이용한 수의 착오 등)

제19조 총무대신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세의 액을 통지한 후에,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신고를 받을 때에 보통교부세의 액의 산정기초에 이용한 수에 관한 착오가 있던 것을 발견한 경우(해당 착오에 관계된 수를 보통교부세의 액의 산정의 기초에 이용한 연도(다음 항에 있어서는 「교부연도」라고 한다)이후 5개 연도 내에 발견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 지방단체에 관하여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가하거나 감소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착오를 발견한 연도 또는 그 다음년도에 있어 총무 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각각 그 증가 또는 감소해야 할 액을 해당 지방단체에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액의 산정에 사용되는 당연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산하거나 감액한 액으로써 해당 지방단체의 해당 연도에 있어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으로 할 수 있다.

2 보통교부세의 액의 산정의 기초에 이용한 수에 관하여 착오가 있던 것을 발견한 연도 또는 그 다음 년도에 있어서는 총무대신은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이 적용된 지방단체로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단체

[부 록]

에 교부해야 할 보통교부세의 액의 산정에 사용되는 당연 해당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한 것 또는 동향의 규정이 적용된 결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한 지방단체에 관하여 교부 연도분으로서 교부를 받았던 보통교부세의 액이 교부를 받는 것이 당연한 보통교부세의 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것을 해당 연도의 교부세로부터 교부하여, 교부연도분으로서 교부를 받았던 보통교부세의 액이 교부를 받는 것이 당연한 보통교부세의 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초과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반환시킬 수 있다. 단 반환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3 폐지분합 또는 경계 변경이 있던 시정촌 및 착오에 관계된 액이 현저하게 거액인 지방단체에 대한 전 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총무성령으로 특례를 둘 수 있다.
- 4 지방단체가 그 제출에 관계된 교부세의 산정에 이용한 자료에 대해 작위를 가하거나 허위기재를 하여 부당하게 교부세의 교부를 받았던 경우에 있어서는 총무대신은 해당 지방단체가 받는 것이 당연한 액을 초과한 부분(「초과액」이라고 한다. 이하 본항 및 차항에 있어 동일)에 관해서는 해당 사실을 발견한 때에 곧바로 해당 초과액을 반환시켜야 한다.
- 5 전항의 경우에 있어 해당 지방단체는 해당 초과액에 해당 지방단체가 해당 지방교부세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반환의 날까지의 기간의 날수에 따라 년 10.95%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한 가산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해당 지방교부세의 교부를 받았던 후 재해가 있는 등 그 밖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대신은 해당 가산금을 감면하거나 기한을 지정하여 연납할 것

을 허가할 수 있다.

- 6 총무대신은 전 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유,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단체에 문서로써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 전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방단체는 총무대신이 제시하는 문서의 기재사항을 그 주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7 지방단체는 제1항으로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무대신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시정촌에 있어서는 해당 이의의 신청은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8 총무대신은 전항의 이의의 신청을 받았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청을 받았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해당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 시정촌의 이의신청에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해당 통지는 도도부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교부세 액의 감액 등의 의견의 청취)

- 제20조 총무대신은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전 2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있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단체에 관하여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
- 2 총무대신은 제10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및 전조 제1항으로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관계 지방단체가 충분한 증거를 들어 형평 또는 공정을 결여하였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공개에 의한 의견의 청취를 행하여야 한다.
- 3 총무대신은 전항의 의견의 청취의 결과 동향의 신청에 정당한

[부 록]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4 전 3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의견의 청취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성령으로 정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권고 등)

제20조의2 관계 행정기관은 그 소관에 관계있는 지방행정에 관하여, 지방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정령에 따라 의무지워진 규모와 내용을 구비할 것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그 지방행정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방단체에 대하여 이를 마땅히 구비하도록 하는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

2 관계 행정기관은 전항의 권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총무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지방단체가 제1항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은 총무대신에 대하여 해당 지방단체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총무대신은 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단체의 소명을 청취하여 재해 그 밖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지방단체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제6항으로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5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감액하거나 반환시키는 교부세의 액은 해당 행정에 대해 법률 또는 이것에 의거한 정령에 따라 의무지워진 규모와 내용을 구비할 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 지방 행정의

수준을 저하시켰기 때문에 필요하게 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액 또는 반환된 교부세의 액의 조치)

제20조의3 전조 제4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한 액은 해당 연도의 특별교부세의 총액에 산입한다.

2 제19조 제2항으로부터 제5항까지 전조 제4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교부한 교부세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키거나 가산금을 납부시켰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환되거나 납부된 액은 해당 반환되거나 납부된 연도의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에 있어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해당 연도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총액에 산입하고 해당 산입한 연도의 특별교부세의 총액에 산입한다.

(도(都) 등의 특례)

제21조 도(都)에 있어서는 도부현에 대한 교부세의 산정에 관해서는 그 전구역을 도부현과 시정촌에 대한 교부세의 산정에 관해서는 그 특별구가 존재한 구역을 시정촌과 각각 간주하고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의 합산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의 합산액으로써 그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으로 한다.

2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전부 사무조합은 읍촌으로 간주한다.

(잔금계산)

제22조 매년도분으로서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총액 또는 각 지방단체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액을 산정한 경우 및 각 지방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및 가산금을 납부시키는 경우에 있어 500엔 미만의 잔금이 있을 때는 그 잔금을 삭제하고

[부 록]

500엔 이상 1000엔 미만의 잔금이 있을 때는 그 잔금을 1000엔으로 계산한다.

(지방재정 심의회의 의견의 청취)

제23조 총무대신은 다음에 언급한 경우에는 지방재정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교부세의 교부에 관한 명령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하려고 하는 때
- 2 제7조에 규정한 다음년도의 지방단체의 세입세출 총액의 전망액에 관한 서류의 원안을 작성하려고 하는 때
- 3 제10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단체에 교부해야 할 교부세의 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때
- 4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단체의 심사의 신고에 관하여 결정을 하려고 하는 때
- 5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세를 반환하려고 하는 때.
- 6 제19조 제8항(제20조의2 제4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단체의 이의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려고 하는 때
- 7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조 제2항에 규정한 결정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때
- 8 제2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려고 하는 때

(사무의 구분)

제24조 제5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7조의3 제2항, 제17조의4 제1항 후단, 제18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 및 제19조 제7항 후단 및 제8항 후단(이러한 규정을 제20조의2 제4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는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